

연구

06-13

#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김유찬·한광석

##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1판1쇄 인쇄/ 2006년 12월 12일

1판1쇄 발행/ 2006년 12월 18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

ISBN 89-8031-418-3

6,000원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 발간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서비스는 면세 상태에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외국 경제학자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과 기술적 시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당성 문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금흐름 베이스로 과세기준을 바꾸면 기술적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서비스의 면세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비과세의 논리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발하는 문제점과 이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실증분석에서는 계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이 GDP, 소비지출, 투자, 고용,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러한 연구의 국내외적 희소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경제의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하나는 다른 조세부문의 조정 없이 과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모두 소비세로 환급하여 세수중립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계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비금융부문 및 정부부문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상쇄되어, 종합적으로 보면 GDP의 증가와 고용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에서도 초기 부담이 결과적으로 반전되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금융부문은 첫 번째 경우와는 반대로 부가가치세 과세로부터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세수중립적 과세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세미나를 통해 연구방향과 연구결과에 대해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한국조세연구원의 홍범교 선임연구위원과 모형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본 연구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특히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본 연구는 끝을 맺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심사를 통해 본 보고서의 내용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자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의견일 뿐 한국경제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 둔다.

2006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노성태

## 목 차

요 약	10
I. 서 론	13
II. 금융서비스의 성격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17
1. 금융서비스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
2. 금융서비스의 속성	20
3.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문제점	25
III.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	31
1.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33
2.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43
IV.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현행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과세제도	45
1.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47
2. OECD국가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54
V.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검토	63
1.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검토	66
2.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73

VI.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모색 .....	77
1.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시스템의 운용원리 .....	80
2. Cash-Flow(CF) 과세시스템에 대한 평가 .....	83
3. TCA 방법을 통한 Cash-Flow 시스템 과세의 보완 .....	86
4. Truncated TCA .....	90
5. EU에서의 Truncated TCA에 대한 실험적 시도 및 평가 .....	90
6. CF 과세방식의 대안 .....	92
7. 대리납부제도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	96
V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	99
1.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	101
2. 부가가치세 과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일반이론 .....	103
3. 실증분석모형 .....	105
4. 사회회계행렬 .....	115
5. 경제적 효과 .....	118
6.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제적 효과 .....	128
VI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39
참고문헌 .....	142
영문초록 .....	146

## 표 목차

<표 II-1> 주요 국가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 .....	19
<표 IV-1>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현황 .....	50
<표 IV-2> OECD국가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면세 현황 ...	55
<표 IV-3>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한 비용 .....	59
<표 V-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소득, 총지출 및 비소비지출 .....	71
<표 VI-1> CF 과세시스템의 예 .....	81
<표 VI-2> TCA 시스템의 예 .....	87
<표 VI-3> 보험료에 대한 과세 .....	94
<표 VII-1>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의 대체탄력성과 세율 .....	114
<표 VII-2> 사회회계행렬 .....	117

## 그림 목차

<그림 VII-1> 수요탄력성값이 0(생필품) .....	104
<그림 VII-2> 수요탄력성이 무한대(사치품) .....	104
<그림 VII-3> 기준균형 대비 GDP 변화 (%) .....	119
<그림 VII-4> 기준균형 대비 소비지출 변화 (%) .....	119
<그림 VII-5> 기준균형 대비 투자변화 (%) .....	120
<그림 VII-6> 기준균형 대비 조세수입 및 정부지출 변화 (%) ..	120
<그림 VII-7> 기준균형 대비 자본량 변화 (%) .....	121
<그림 VII-8> 기준균형 대비 노동량 변화 (%) .....	122
<그림 VII-9> 기준균형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 .....	123
<그림 VII-10> 기준균형 대비 생산자물가지수(PPI) 변화 (%) .....	124
<그림 VII-11> 기준균형 대비 금리변화 (%) .....	124
<그림 VII-12> 기준균형 대비 실질임금 변화 (%) .....	125
<그림 VII-13> 기준균형 대비 환율변화 (%) .....	125
<그림 VII-14> 기준균형 대비 생산량 변화 (%) .....	126
<그림 VII-15> 기준균형 대비 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	127
<그림 VII-16> 기준균형 대비 비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	127
<그림 VII-17> 기준균형 대비 GDP 변화 (%) .....	129
<그림 VII-18> 기준균형 대비 소비지출 변화 (%) .....	130
<그림 VII-19> 기준균형 대비 투자변화 (%) .....	130
<그림 VII-20> 기준균형 대비 자본량 변화 (%) .....	131



<그림 VII-21> 기준균형 대비 노동량 변화 (%) .....	132
<그림 VII-22> 기준균형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 .....	133
<그림 VII-23> 기준균형 대비 실질임금 변화 (%) .....	133
<그림 VII-24> 기준균형 대비 금리변화 (%) .....	134
<그림 VII-25> 기준균형 대비 생산자물가지수(PPI) 변화 (%) .....	134
<그림 VII-26> 기준균형 대비 환율변화 (%) .....	135
<그림 VII-27> 기준균형 대비 생산량 변화 (%) .....	136
<그림 VII-28> 기준균형 대비 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	137
<그림 VII-29> 기준균형 대비 비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	137

## 요 약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세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과세표준(Tax Base)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이자율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여타 분야에 대한 면세제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에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가 과세보다 꼭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판단할 때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의 핵심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이론적으로 타당한가와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시행 가능한가 하는 것으로, 전자에 대한 논의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는 쪽이 현재 논리적으로 우세하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Cash-Flow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를 어렵게 하던 기존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Cash-Flow 시스템을 보완하는 각종 제안들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교육세 및 증

권거래세 세 부담을 감안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논리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금융보험업이 다양한 부수업무(컨설팅 등)를 수행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일부 기능이 외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비과세의 논리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서비스의 국가경제적 비중과 금융서비스의 속성,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발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개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OECD국가들의 제도 현황을 비교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검토했다. 실증분석에서는 완전예측(Pefect Foresight)을 가정한 동적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우리 경제에 유발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의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다른 조세부문의 조정 없이 과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모두 소비세로 환급하여 세수중립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보다 기업 및 정부부문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GDP의 증가와 고용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개인부문에 대한 부

정적 효과는 미약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세수중립적 과세가 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 I. 서론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면세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적합한 과세표준(Tax Base)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이자율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그러나 여타 분야에 대한 면세제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가 과세보다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판단할 때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의 핵심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이론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시행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논의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는 쪽이 현재 논리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Cash-Flow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를 어렵게 하던 기존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Cash-Flow 시스템을 보완하는 각종 제안들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교육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세 부담을 감안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논리의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금융보험업이 다양한 부수업무(컨설팅 등)를 수행하고, 금융지주회사

의 설립 등으로 일부 기능이 외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비과세의 논리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효과의 분석은 동적 계산가능 일반균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본 연구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 이은 II장에서 금융서비스의 국가경제적 비중과 금융서비스의 속성을 살펴본 후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발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기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개관하고, IV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과 OECD국가들의 제도 현황을 비교해 본다. V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고, VI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진행을 살펴본다. VII장에서는 CGE 모형을 통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우리 경제에 유발하는지 분석한다. 우선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서 생기는 세수증가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 세수증가분을 민간에 환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수중립적 과세가 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III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시사점을 정리한다.



## II. 금융서비스의 성격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 1. 금융서비스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II-1>에서 보듯 선진국의 GDP에서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 30%에 육박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다소 낮은 24% 정도이다. 이처럼 금융서비스가 개별 국가들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면세로 머물게 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왜곡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전체적인 상호 검증효과도 크게 방해받을 수 있다.

<표 II-1> 주요 국가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

국 가	금융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프 랑 스	30.5
독 일	30.8
영 국	29.9
일 본	23.9
미 국	27.7
캐 나 다	25.7
호 주	26.2
뉴질랜드	29.2
EU 평균	27.8
한 국	23.8

주: 2001년 기준 자료임.

자료: Zee, H. H., "A New Approach to Taxing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under a VAT," *National Tax Journal*, Vol.58, 2005, pp.77-92.

## 2. 금융서비스의 속성<sup>1)</sup>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논하기 위하여 우선 금융서비스의 성격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어려움이 금융서비스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 그 자체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완전하고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에서 금융상품이 존재할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은 논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일반균형모델에서는 금융서비스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거래비용과 나아가서는 다른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흔히 ‘금융중개’기능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금융중개기능은 부가가치세라는 일반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마진(Financial Margins)의 한 요소가 된다.

금융흐름(Financial Flows)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요소가 금융중개기능에 해당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자.

1. 나중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애초의 예금: 이는 자금의 이전에 해당되며 과세대상은 아니다.

2. 순수 이자지불: 이는 소비의 이연에 대한 대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자지불은 수취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소득이 소비될 때 비로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1) European Commission, *Value Added Tax: A Study of Methods of Taxing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1996, pp.16-19.

3. 순수한 위험할증금(Risk Premium): 채권이 대손(Defaults) 가능성을 커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어떠한 이윤적 요소나 위험공동화(Risk Pooling)의 행정적 비용을 배제한 단순한 대손 예상가치로 정의된다. 이 요소도 관련된 당사자 간에 펀드의 재분배나 자산이전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 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4.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 및 주주에 대한 이윤 형태의 보상이다. 이 부분이 금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에 해당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다시 7개 종류의 서비스로 구분된다.

### 가.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의 중개

금융기관은 자금을 제공하는 측(저축자)과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수요하는 측(투자자) 사이에 금융계약을 가능하게 한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계약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은 저축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고, 금융계약에 대한 정보수집과 체결의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독점적인 위치에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잘 대처할 수 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계약과 투자자의 예기치 않은 행태(예를 들어 도덕적 해이에 의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적절한 형태의 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 금융기관은 투자자와 저축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이행의 촉구 및 감독, 계약조건의 변경요구와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의 예방 등에 있어서 유리하다.

## 나. 저축의 Pooling

개인들의 저축은 투자의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 저축자들은 투자자와 계약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의 중개를 거치는 것이 계약의 협상과정에서 큰 비용절감이 될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의 숫자는 줄이고 규모는 투자의 크기에 상응하게 된다.

## 다. 위험공동화(Risk Pooling)

실물경제와 금융 분야의 계약에는 여러 종류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위험기피적 경제인은 경제활동과 연관된 리스크를 가능한 한 줄이고 싶어한다. 결과적으로 투자수익의 가변성을 줄여 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라. 유동성 제공

유동성 자산의 수익성에 비하여 비유동성 자산은 수익의 가변성 때문에 예상수익률 수준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들은 자신이 보유하고자 하는 자산의 유동성과 수익률과 관련하여 각기 다양한 선호 성향을 갖는다. 금융기관은 스스로 소유한 유동성 자산을 제공하고 비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 마. Clearing Service의 제공

실물경제에서의 거래와 특정한 형태의 금융상품의 거래는 거래 비용을 수반한다. 금융기관은 적절한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음으로써 이러한 거래의 실행을 가속화하고 비용을 줄여 준다. 또 금융기관은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 및 실물교환과 관련한 금융거래의 세부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치를 창출한다.

## 바.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 조성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금융상품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교환을 위하여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탐색비용을 줄여 주고 효율적인 기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제한하고 개별적 참여자들의 실행비용(Costs of Enforcement)을 줄여 준다.

## 사. 대리서비스(Agency Service)

여러 종류의 금융서비스는 경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된다. 대리인들은 소비자들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거래비용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금융수단 중에서 선택하는 탐색비용 등을 줄여 주기도 한다.



### 3.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문제점

#### 가.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반적인 문제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과세거래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을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그 거래의 전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면세가 최종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에 적용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하고, 소비자는 면세로 인하여 종국적으로는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계획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면세제도 때문에 다단계 비누적적 소비세라는 부가가치세의 좋은 특성이 훼손되는 것이다.<sup>2)</sup>

#### 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문제점<sup>3)</sup>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산업 분야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왜곡현상을 발생시키고,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금융업자 자신도 면세

2) 김유찬,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p.7.

3) European Commission, *Value Added Tax: A Study of Methods of Taxing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1996, pp.25-33.

사업자인 까닭에 제3자로부터 공급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숨은 부가가치세(Hidden VAT)는 내부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게 되고, 나아가 수출원가를 구성하게 되므로 외부중립성도 훼손된다. 또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를 개인들이 소비하는 단계에서는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한다.

### 1) 면세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의 정의 및 구분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세시스템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와 다른 재화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서비스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나라마다 이에 대한 정의 및 면세범위가 다르다. 또 금융서비스는 비금융기관에서 제공되기도 하는데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신용 판매사업의 경우가 그 예이다. 중립적 취급을 위하여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도 면세가 허용되어야 하나 이런 경우 비금융기관은 고유 업무와 금융서비스 업무를 겸하므로 양 분야에서 매입세액공제액을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2) 매입세액공제의 배분

면세활동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과세대상 서비스나 영세율 적용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입비용을 일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분야와 가능하지 않은 분야로 나누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납세자들은 이 방식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도록 회계시스템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 분배방법

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과세 당국과 납세자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같은 구조 변경이 있게 되면 매입세액공제의 방식에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변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전가격조작과 유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면세활동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룹기업으로부터의 구매액을 일부러 낮게 기장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기게 된다.

### 3) 부정적 경제 효과

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경과세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가 면세되면 이는 금융서비스가 기타 다른 과세재화 및 서비스에 비하여 경(輕)하게 과세(Under-Taxation)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는 전체 경제에는 후생손실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나) 누적효과(Tax Cascading)로 인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중과세

면세되는 금융서비스가 생산과정의 중간재로서 제공되면 이는 투입물(Input)이나 이 금융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들어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못한다. 그러나 면세 금융서비스의 공제되지 않는 세액은 비금융재화 및 서비스의 최종가격에 포함되고, 이는 그 전체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세금액은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금융서비스를 투입재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금융서비스를 투입재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재화

나 서비스에 비하여 중과세(Over-Taxation)되게 된다. 이는 금융서비스를 투입재로 하는 재화에 대하여 과소 소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경제에는 후생손실을 가져온다.

#### 다) 국제적 경쟁 왜곡

국외의 지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이 국내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기관의 그것보다 과세상 유리해진다. 국외에 소재한 기관의 서비스는 그것이 국내의 가게나 기업에 제공될 때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나, 국내 기관의 금융서비스는 매입부가가치세 부담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경쟁의 왜곡을 가져온다.

#### 라) 투입재의 자체공급과 관련한 왜곡현상(Self Supply Bias)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투입물(Input)을 자가생산하도록 유인한다. 금융기관이 필요한 투입재를 자가생산하는 경우 아웃소싱보다 유리한데 이는 외부에서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내부에서 자가생산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일 금융서비스가 과세재화라면 이 과정에서 외부공급 받은 투입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중립적으로 작용하나 면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은행이 외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투입재는 인쇄, 실내장치, 은행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제작, 영업업무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것들을 부가가치세의 불리함 때문에 모두 내부에서 자가생산하려 든다면 전문성의 부족으로 큰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 마) 정부의 조세수입

금융서비스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면세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정부의 세수입이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 하는 것은 불분명하다. 개별 국가마다 금융기관의 투입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규모와 금융서비스를 가계가 소비할 때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규모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전체적인 세수입은 늘거나 줄게 될 것이다. 만약 어느 나라에서 금융기관의 투입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규모가 가계가 금융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규모보다 크다면 금융서비스 면세의 과세전환은 정부의 부가가치세 세수입을 줄게 할 것이다. 반대로 금융기관의 투입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규모가 가계가 금융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규모보다 작다면 정부의 세수입은 늘게 될 것이다.

#### 4) 금융기관의 투입재로서 수입서비스에 대한 과세 문제

과세재화가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무형재화와 서비스)에는 수입업자가 대리납부(Self-Assessment 혹은 Reverse-Charge)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입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스스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대리납부제도이지만 이는 행정상 복잡하여 징수비용과 납세준용비용을 야기시킨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수관계 기업 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평가(Valuation) 문제, 대리납부의 시점, 과세범위(국외의 서비스 구매 모두에 해당되는가 혹은 수입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서비스에만 해당되는가?) 등이다.



### Ⅲ.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





# 1.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 가. 최근의 전체적인 연구 동향

최근에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기 이전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Shoup(1947)와 Steuerle(1985)는 이자는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래의 소비를 현재의 소비로 바꾸어 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만 작용하므로 부가가치를 유발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논의과정에서도 Grubert and MacKie(2000)는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등장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소비재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투자서비스는 투자재 가격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소비재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즉 사업비용에 해당되며 소비비용은 아님) 소비세는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자지불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자금대여서비스도 직접 소비할 수 없는 것으로 단지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의 대체관계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하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에 대한 선택에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투자서비스는 개인의 자산증식을 도와 주는데, 이를 통하여 증식된 자산을 소비하는 경우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보았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기자금으로 구매하는 사람이건 차입자금으로 구매하는 사람이건 결국 같은 자동차를 소비하는 것이지만 금융서비스에 과세를 하게 되면 차입

자금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sup>4)</sup>

Chia and Whally(1998)는 금융서비스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소비세 과세와 포함한 소비세 과세를 일반균형모델에서 모의실험(Simulation)을 행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금융서비스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가 우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외에 과세에 대한 반대의견은 효율성에 근거한 이론적인 지적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근거로 하기도 하였는데, 이창희(2002)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용역의 대가는 이자와 기타 부차적인 서비스 대가와 구분되어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sup>5)</sup>

Jack(2000)과 같은 연구자도 기본적으로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에 동조했다.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에 대한 선택의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율이나 보험 프리미엄 등에 숨겨져 있는 일정 비율의 형태를 갖는 금융서비스의 대가는 비과세하고, 분리가 가능한 고정액의 대가(Identifiable Fixed Fees)는 과세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소비재를 같은 세율로 과세하면 소비재뿐 아니라 과세되지 않는 금융서비스(대가가 일정한 비율의 형태를 가지는)도 같은 비율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 과세하면 소비재들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경제 주체가 이자를 대가로 지불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한 미래의 소비를 현재의 소비로 바꿔 주는 것도 경제 주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자동차 소비와 같은 종류의 이중과세는 과세되는 다른 비금융서비스(예를 들어 법률서비스, 세무서비스)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5) 그러나 이 견해는 이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과세에 대한 찬성의견은 기본적으로 면세제도가 갖는 왜곡효과가 크다는 데서 출발하는데, 비과세하면 금융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다른 재화에 비하여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되게 하는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Merrill and Adrion(1995)). 즉, 이자를 다른 금융서비스 대가와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이자도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대체하는 대가이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Dept. of Treasury(1984)).

Chia and Whally(1998), Jack(2000)과 Grubert and MacKie(2000) 등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가 효율적이라고 보는 논리에 대하여 Rousslang(2002), Auerbach and Gordon(2002) 등이 반론을 제기하고, Auerbach and Gordon(2002)은 Jack(2000)과 Grubert and MacKie(1999)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동 연구자들의 분석모델은 근로소득세에 상응하는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에서 출발하여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투입물(Real Resources and Financial Services)에 대해 과세해야만 모든 재화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sup>6)</sup>

다른 한편 Jack(2000), Hoffman et al.(1987), McCann and Edgar(2003) 등은 이자를 확실하게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면세를 하면 금융기관의 투입물에 대한 환급이 안 되므로 다른 재화에 대한 과세의 영향이 금융기관에 미치며 시점간 조세왜곡(Intertemporal Tax Distortion)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6) 일반균형모델에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름: 완전경쟁시장(완전한 시장정보, 거래비용 부재)하에서는 금융서비스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일반균형모델에서는 금융서비스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금융시장에서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거래비용을 조절하고 다른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여 주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Poddar and English(1997)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현금흐름(Cash-Flow) 방식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주장하였다. 이는 이자를 발생하게 하는 금융기관 자금의 대여 및 상환도 재화의 매출 및 대가지불과 동일한 거래흐름으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Cash-Flow 방식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Invoice/Credit 형 VAT에 합치된다는 장점을 가지나 McCann and Edgar(2003)는 최근의 연구에서 Cash-Flow 방식의 과세는 납세순응비용이 높다고 보았다. 또 실무적인 문제점으로 체제전환시점의 문제(전환 이전에 대여한 자금을 그 이후에 상환받는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최소한 Cash-Flow Implication 있음)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문제를 TCA(Tax Calculation Account)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시 제시되었다(Poddar and English(1997) 등).

결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관건은 논리적인 문제보다 이러한 과세시스템이 실무적인 어려움을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검토와 이런 유형의 과세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 나. Auerbach and Gordon의 연구

Auerbach and Gordon(2002)의 분석모형은 근로소득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개념에서 출발하였는데, 여기서 모든 재화에 부과되는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가 비례세율 구조를 가진 근로소득세에 상응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세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동 연구자들은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재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상응하는 것이므로, 금융서비스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투입물(Real Resources and Financial Services)에 대하여 과세해야만 모든 재화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위 연구자들은 금융서비스의 생산에 실물자원(Real Resources)의 투입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 자신들의 연구결과가 Jack(1999), Chia and Whally(1999)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동 연구자들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위험할증금(Risk Premium)과 관련한 Over-Taxation과 Border Correction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동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하였다.

### <Auerbach and Gordon(2002)의 분석>

근로소득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의 전제하에서 개인의 평생 예산의 제약과 불변의 근로소득세 조건이 성립하면,

$$(1 - \tau) \sum_t (1 + r)^{-t} w_t h_t + A = \sum_{i,t} (1 + r)^{-t} p_{it} C_{it} \quad (\text{III-1})$$

이때  $A$ 는 개인에게 부여된 초기 재산이며,  $\tau$ 는 근로소득세율,  $r$ 은 실질 제한인율,  $w_t$ 는 명목임금,  $p_{it}$ 는 재화  $i$ 의 가격,  $C_{it}$ 는 재화  $i$ 의 소비, 그리고  $h_t$ 는  $t$ 시점의 근로시간을 각각 의미한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초기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위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1 - \tau) \sum_t (1 + r)^{-t} w_t h_t = \sum_{i,t} (1 + r)^{-t} p_{it} C_{it} \quad (\text{III-2})$$

$s = \tau / (1 - \tau)$ 가 성립하면 위의 근로소득세율  $\tau$ 로 표시된 예산 제약식은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s$ 로 표시되는 다음의 예산제약식과 상응하게 된다.

$$\sum_t (1+r)^{-t} w_t h_t = (1+s) \sum_{i,t} (1+r)^{-t} p_{it} C_{it} \quad (\text{III-3})$$

이 경우 정부 세수입  $R$ 은  $R \equiv s \sum_{i,t} (1+r)^{-t} p_{it} C_{it}$ 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R &= \left( \frac{\tau}{1-\tau} \right) (1-\tau) \sum_t (1+r)^{-t} w_t h_t \\ &= \tau \sum_t (1+r)^{-t} w_t h_t \end{aligned}$$

우선 근로소득세하에서의 균형을 생각해 보자. 모든 재화의 소비자가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p_{it} = C_{it} + b_{it}$ 이다. 여기서  $C_{it}$ 는 재화 그 자체의 생산비용이며  $b_{it}$ 는 재화를 실제로 구매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거래비용을 합한 것이다. 생산비용  $C_{it}$ 는 중간재 가격과 매기당 투입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 등의 주된 생산요소들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단순화를 위하여 노동을 생산요소라고 보면  $C_{it} = C_{it}(q_t, r, w)$ 이며, 이때  $q_t$ 는 중간재의 가격 벡터(모든 구입의 거래비용을 포함한다)이다.

이 재화를 구입하기 위한 거래비용  $b_{it}$ 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쇼핑을 위한 시간비용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수표 등을 통한 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실제비용, ATM 및 은행지점 유지비용 등이 그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투자중개인들도 중간재와 자본 그리고 노동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고 보면 이 비용들은  $C_{it}$ 와 동일한 생산요소가격에 좌우된다.

즉  $b_{it} = b_{it}(q_t, r, w)$ 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은 인구 1인당 개념으로는 근로소득세 제도하에서

$$\tau \sum_t (1+r)^{-t} w_t h_t = \sum_{i,t} (1+r)^{-t} p_{it} G_{it} \quad (\text{III-4})$$

이며, 이때  $G_{it}$ 는  $t$ 기에 정부에 의하여 구입된 재화  $i$ 의 규모이다. 정부도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재화에 대하여 직접적 생산비용( $C$ )과 거래비용( $b$ )을 지불한다고 보고  $\tau$ 의 세율을 가지는 근로소득세를  $s = \tau/(1-\tau)$ 가 성립하는  $s$  세율의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우선 과거의 가격수준을  $(w, C, b)$ 라고 하고 새로운 가격수준을  $(w^*, C^*, b^*)$ 라고 하자. 여기서  $C$ 와  $b$ 는 재화의 가격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의 벡터이다.

거래의 명목가치가 변화하지 않고  $((1-\tau)w = w^*)$ , 부가가치세가 모든 재화의 거래비용을 포함한 총구매가에 적용된다면 개인들의 예산제약은,

$$\begin{aligned} & \sum_t (1+r)^{-t} w_t^* h_t \\ & = (1+s) \sum_{i,t} (1+r)^{-t} p_{it}^* C_{it} = \left( \frac{1}{1-\tau} \right) \sum_{i,t} (1+r)^{-t} p_{it}^* G_{it} \end{aligned} \quad (\text{III-5})$$

이 된다. 식 (III-2)와 식 (III-5)를 비교하면,  $p^* = p(1-\tau)$ 인 경우에 같은 모양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가격  $p^*$ 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p$ 는 직접생산비용인  $C$ 와 거래비용인  $b$ 로 구성되므로 우선  $C$ 에 대하여 살펴보면,  $C_{it}^* = C_{it}(q_t^*, r, w_t^*) = C_{it}(q_t^*, r, w_t(1-\tau))$ 이므로  $q_t^* = (1-\tau)q_t$ 이고, 실질이자율  $r$ 이 변하지 않으면  $C_{it}^* = (1-\tau)C_{it}$ 가 성립한다.

$$\text{또 } b_{it}^* = b_{it}(q_t^*, r, w_t^*) = b_{it}(q_t^*, r, w_t(1-\tau)) \text{이므로 } q_t^* = (1-\tau)q_t \text{이}$$

고, 실질이자율  $r$ 이 변하지 않으면  $b_{it}^* = (1 - \tau)b_{it}$ 가 성립한다. 그리고  $p_{it}^* = c_{it}^* + b_{it}^*$ 인 이상  $q_t^* = (1 - \tau)q_t$ 이고, 실질이자율  $r$ 이 변하지 않으면  $p_{it}^* = (1 - \tau)p_{it}$ 가 성립한다.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최종소비재와 중간재의 과세 전 시장가격은  $(1 + s) = 1/(1 - \tau)$ 만큼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명목 세후소득과 명목 소비자가격은 근로소득세하에서처럼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는 부가가치세는 직접생산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또 이러한 거래를 유발시키는 모든 주된 그리고 중간재적인 투입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경우 정부의 예산제약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간단하다. 이전에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았으나

$$\tau \sum_t (1 + r)^{-t} w_t h_t = \sum_{i,t} (1 + r)^{-t} p_{it} G_{it}$$

현재는 다음과 같다.

$$s \sum_{i,t} (1 + r)^{-t} p_{it}^* C_{it} = \sum_{i,t} (1 + r)^{-t} p_{it}^* G_{it}$$

그러나 이 새로운 예산제약식은 다음 식(III-6)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left( \frac{\tau}{1 - \tau} \right) \sum_{i,t} (1 + r)^{-t} (1 - \tau) p_{it} C_{it} = \sum_{i,t} (1 + r)^{-t} (1 - \tau) p_{it} G_{it} \quad (\text{III-6})$$

또 식(III-6)은 줄이면,



$$\tau \sum_{i,t} (1+r)^{-t} p_{it} \bar{C}_{it} = (1-\tau) \sum_{i,t} (1+r)^{-t} p_{it} G_{it}$$

이 된다. 식(III-2)가 주어질 때 식(III-6)과 식(III-4)가 동일하므로 정부의 실질예산제약은 변화하지 않는다.

Auerbach and Gordon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Jack(1999)과 Chia and Whally(1999)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결과이나 이 두 가지 연구결과가 가정하는 바와 같이 금융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실물자원(Real Resources)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Auerbach and Gordon의 연구결과도 Jack과 Chia and Whally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얻는다. 따라서 이 가정이 연구의 결론을 좌우한다고 보여지는데 Auerbach and Gordon의 견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서비스의 생산과정에도 실물자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 다.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과세

이자 이외의 은행의 금융서비스 대가<sup>7)</sup>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이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세에 찬성하는 논리가 우세하다. 이론적인 면에서 Grubert and MacKie(2000) 등은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도 동 서비스가 소비자의 직접적인 효용함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미 이자에 대한 과세 논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

7) 자금이체서비스 수수료, 계좌유지서비스 수수료, 공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금융거래정보제공수수료, 대여금고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등 우리나라 국내 은행은 수신, 여신, 외국환, 전자금융, 신용카드의 5개 분야에서 총 119종의 수수료 수입이 있다(이재연(2001)).

은 논리로 Auerbach and Gordon(2002)은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과세가 타당함을 주장한다. 또 Jack(2000)은 이자에 대한 과세는 왜곡을 야기하므로 과세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자 이외에 이자와 분리가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지불형태가 고정액이든지 혹은 대가에 비례하는 형태이든지 간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실무적으로 볼 때 McCann and Edgar(2003)는 이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경쟁시장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이자나 다른 분야로 전가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Premium)와 청구권(Claim)의 차이가 보험서비스의 가치가 되는데, 이는 Cash-Flow를 기준으로 보험료와 청구권에 대하여 투입물과 산출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Barham et al.(1987)).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이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저축성 요소와 보장성 요소로 분리 취급해야 할 것이다.

## 2.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부가가치세 과세가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시행 가능한가에 관한 연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 현금흐름(Cash-Flow)에 대한 과세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대리납부제도(Reverse-Charge-System)를 통한 것이다. 현금흐름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부가가치세제와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Poddar and English(1997) 등의 주장에 따라 EU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10여 년에 걸쳐 현금흐름에 의한 과세방법의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가 E&Y(2002)에서 제시된 바 있다. 대리납부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Zee(2005)에 의하여 제시되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부가가치세제와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IV.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현행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과세제도



# 1.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 가.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생산의 각 단계마다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일반거래세의 일종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면세를 인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금융용역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와 다른 사업자 간의 조세중립성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급형 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용역: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단체의 금고 대행용역은 제외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이에 비해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다음의 재화 및 용역이 이에 포함된다.

- 담보재화 등의 자산평가용역
-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 면세용역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재화
-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그러나 금융·보험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재화이거나 용역이 사업성을 가지면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이는 사업성을 갖지 않는 과세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성을 가지면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면세 및 과세 여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 인수: 면세
- 상호부금: 면세
-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대출(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함): 면세
-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면세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면세
- 국공채 창구매매: 면세
- 팩토링: 면세
- 보호예수: 면세



- 수납대행, 지급대행: 면세
-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면세
-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과세
-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및 금지금의 판매대행: 과세
- 금지금의 소비대차, 금 적립계좌 등의 개발 및 판매(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금지금에 한함): 면세
- 신용정보서비스: 과세
- 부동산임대: 과세
- 복권 및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과세
- 파생상품금융거래: 면세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과세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대여: 과세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면세
-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면세
-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수단의 발행·판매, 대금결제: 면세
-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면세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면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자산관리 및 채권추심 수탁: 면세

이하의 <표 IV-1>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금융·보험업이 제공하는 각종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과 면세되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1>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현황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	부가세(10%)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수신, 여신, 환업무 - 채권 및 운용(유가증권·파생상품) - 수납, 지급대행 - 부동산임대, 복권 등 판매대행 - 한국수출입은행	x x x ○ x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회사) •수수료수익(위탁매매수익, 수익증권 등) •자기매매업(단기매매, 파생상품 등)	x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은행업 등 포함)	x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 투자신탁업 - 투자회사업(Mutual Fund) - 자산운용회사업 •자산운용수입 - 수탁회사업 - 자산보관회사업(은행, 신탁회사) - 판매회사업(증권회사) - 일반사무수탁회사업 - 투자자문 및 일임업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유가증권 등 매매이익	x x x x x x x x x x x x
○전당포업	x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x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x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114개) - 대출이자 - 기타 영업수익(배당금 등) - 부동산임대 - 수수료수입	x x ○ x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 보증료 - 신용평가 - 부동산임대	x ○ ○

<표 IV-1> 계속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	부가세(10%)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x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수입</li> <li>• 자산운용 (이자수익)</li> <li>(부동산임대)</li> </ul> </li> <li>- 보험중개·대리업</li> <li>-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업</li> </ul>	x x x ○ x x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제서비스 수수료</li> <li>• 자금유통(현금서비스, 카드론)</li> </ul> </li> <li>- 리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리스</li> <li>• 운용리스</li> <li>• 팩토링, 운전자금대출 등</li> </ul> </li> <li>- 할부금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부금융</li> <li>• 리스</li> <li>• 신기술금융</li> <li>• 대출(론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 수입)</li> <li>• 예금 및 할인이자</li> </ul> </li> <li>- 신기술사업금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수익</li> <li>• 대출수익</li> <li>• 수입수수료(조합관련) 등</li> </ul> </li> </ul>	x x x x x x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추심</li> <li>- 신용조사</li> <li>- 민원대행</li> <li>- 부동산임대</li> </ul>	x x ○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x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유동화사업</li> <li>- 자산관리사업</li> </ul>	x x

<표 IV-1> 계속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	부가세(10%)
○ 주택저당채권 유통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유통화회사 및 채권관리자 - 채권유통화 관련사업 -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x x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 - 채권유통화와 관련된 사업 -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x x
○ 그 밖의 금전대부업	x

자료: 홍범교 외,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나.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현황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대해서는 0.5%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보험업자를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하는데, 이 중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은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한국보험공사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 수입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수입할인료
  -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 신탁보수
  - 유가증권 평가익 및 대여료
  -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함)
  - 수입임대료
  - 고정자산처분익
  -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

2003년의 교육세 수입 3조6,510억원 중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한 세액은 5,140억원으로 14.1%를 차지했다.

## 2. OECD국가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 가. 금융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VAT 취급

과세대상 금융서비스와 면세대상 금융서비스는 나라별로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표 IV-2> 참조). 예외적인 나라는 당좌계좌, 대출, 자금거래와 같은 주요 은행서비스에 대해 간접세가 적용되는 호주, 멕시코, 일본 및 터키이며, 다른 예외는 특정한 공급과 관련한 것인데,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서 손해보험의 보험료에 과세하는 것과 금융리스, 수탁서비스, 펀드·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 등을 말한다.

### 나. 부가가치세 환급

비용에 대한 환급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회원국들 간에 상당히 다르며 개별 국가들은 환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급의 성질, 회계 관습, 공급의 평가기준, 조세환급이 인정되지 않는 비용, 최소한 규정 및 감면규정 등이 그것이다.

과세공급과 관련한 직접적인 매입세액의 환급에 대하여는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모든 회원국들이 과세공급을 이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매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하게 환급한다.

<표 IV-2> OECD 국가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면세 현황

	1 Dealing in Money	2 Operation of Bank Account	3 Documentary Credit	4 Provisions of Loans	5 Credit card Services	6 Financial Guarantee	7 Guarantee Claims	8 Dealing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Shares	9 Stock Lending
AUSTRIA	E	E	E	E	E	E	OS	E	E
BELGIUM	E	E	E	E	E	E	E	E	E
CANADA	E	E	E	E	E	E	E	E	E
DENMARK	E	E	E	E	E	E	E	E	E
FINLAND	E	E	E	E	E	E	E	E	E
FRANCE	E	E	E	E	E	E	E	E	E
GERMANY	E	E	E	E	E/T	E	OS	E	E
GREECE	E	E	E	E	E	E	E	E	E
HUNGARY	E	E	E	E	E	E	E	E	E
IRELAND	E	E	E	E	E	E	OS	E	E
ITALY	E	E	E	E	E	E	OS	E	OS
JAPAN	T	T	E	E/T	T/E	E	OS	E	E
LUXEMBOURG	E	E	E	E	E	E	OS	E	E
MEXICO	E	T	E	T/E	T	OS	OS	T	T
NETHERLANDS	E	E	E	E	E	E	E	E	E
NEW ZEALAND	E	E	E	E	E	E	E	E	E
NORWAY	OS	OS	OS	OS	OS	OS	OS	OS	OS
PORTUGAL	E	E	E	E	E	E	OS	E	E
SPAIN	E	E	E	E	E	E	OS	E	E
SWEDEN	E/T	E	E	E/T	E	E	OS	E	E
SWITZERLAND	E	E	E	E	E	E	E	E	E
UK	E	E	E	E	E	E	OS	E	E

<표 IV-2> 계속

	10 Share Dividends	11 Futures	12 Options	13 Swaps	14 Underwriting Financial Instruments	15 Dealing in Foreign Exchange	16 Financial Leases	17 Debt Collection	18 Debt Factoring	19 Safekeeping
AUSTRIA	OS	E	E/I/T	E	E	E	T/E	T	E	T
BELGIUM	OS	OS	OS	OS	E	E	T	E/I/T	E/I/T	T
CANADA	E	E	E	E	E	E	T	T	E	T
DENMARK	OS	E	E	E	E	E	T	T	T/E	T
FINLAND	OS	E/I/T	E/I/T	E	E	E	T/E	T	E	T
FRANCE	OS	E	E	E	E	E	T/E	T	E	T
GERMANY	OS	OS	E/I/T	E	E	E	T/E	T	T/OS	T
GREECE	E	E	E	E	E	E	T	T	T	T
HUNGARY	OS	E	E	E	E	E	T	T	E	T
IRELAND	OS	E	E	E	E	E/OS	T	T	E	T
ITALY	OS	E	E/I/T	OS/E	E	E/OS	T/E	E	E	T
JAPAN	OS	OS	OS	OS	T	E	T/E	T	T	T
LUXEMBOURG	OS	E	E	E	E	E/OS	T	T	E	T
MEXICO	OS	E	E	E	OS/T	OS/T	T	T	OS	T
NETHERLANDS	E	E	E	E	E	E	T/E	T	T	T
NEW ZEALAND	OS	E	E	E	E	E	T/E	E	E	T
NORWAY	OS	OS	OS	OS	OS	OS	T	OS	OS	T
PORTUGAL	E	E/I/T	E/I/T	E	E	E	T	T	E	T
SPAIN	OS	E/I/T	E/I/T	E	E	E	T/E	T	E	T
SWEDEN	OS	E	E	E	E	E/OS	T/E	T	E	T
SWITZERLAND	E	E	E	E	E	E	T	T	E/I/T	T
UK	OS			E	E	OS/E	T/E	T	E/I/T	T



<표 IV-2> 계속

	20	21	22	23	24	25	26	27
	Advisory Services	Provision of Life Insurance/ Reinsurance	Provision of Non-Life Insurance/ Reinsurance	Settlement of Insurance Claims	Loss Adjusting Services	Trustee Services	Fund Management	Professional Services
AUSTRIA	T	E	E	OS	T	T	E	T
BELGIUM	T	E	E	E	T/E	T	E	T
CANADA	T	E	E	E	E	T	E	T
DENMARK	T	E	E	OS	T	T	E	T
FINLAND	T	E	E	E	E	N/A	T	T
FRANCE	T	E	E	OS/T	T	T	T/E	T
GERMANY	T	E	E	OS	T	T	E	T
GREECE	E	E	E	E	T	T	E/T	T
HUNGARY	T	E	E	E	E	E	E	T
IRELAND	T	E	E/T	OS	T	T	T/E	T/E
ITALY	T	E	E	E	T	E	E	T
JAPAN	T	E	E	OS	T	E/T	T/E	T
LUXEMBOURG	T	E	E	OS	T	E	T	T
MEXICO	T	E	T	OS	T	T	T	T
NETHERLANDS	T	E	E	E	T	T	E/T	T
NEW ZEALAND	T	E	T	T/E	T/E	E	E	T/E
NORWAY	OS	OS	OS	OS	OS	OS	OS	OS
PORTUGAL	T	E	E	OS	T	N/A	E	T
SPAIN	T	E	E	OS	T	N/A	E/T	T
SWEDEN	T	E	E	OS	T	N/A	T/E	T
SWITZERLAND	T	E	E	E	T	T	E	T
UK	T	E	E	OS	T	T	T/E	T

주: T: 과세, E: 면세, Z: 영세율, OS: 과세영역이 아님.

자료: OECD, "Indirect Tax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Instruments," 1998.

EU 역외의 고객에 대한 공급 및 재화수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매입세액의 환급도 노르웨이 및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이 허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급이 회원국 외부로 공급되었다는 증명을 요구한다.

당해 공급이 과세공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불문하고 특별한 형태의 지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회원국들은 접대(Entertainment)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부정하며, 또 많은 국가들이 특별한 구매(예를 들면 회사차, 선물 등)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상당한 부분이 과세대상 또는 면세되는 산출물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산출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적어도 일정 부분 사용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계산되는 기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비례법에 근거한 단일수입(Single Pot Revenue)방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과세 및 면세 부문으로 사업을 분할하여 과세부문에 대하여만 환급하는 방법, 그리고 표준환급률(Standard Recovery Percentage)을 적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선택되며, OECD국가들은 이러한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IV-3>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한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비용	
캐나다	접대비용의 50%
덴마크	차, 호텔, 접대, 선물
핀란드	접대, 승용차
그리스	승용차 및 모터사이클의 취득·유지·연료주입, 접대, 비행기, 선박, 숙박, 여행비용, 음식, 음료, 담배
아일랜드	가솔린, 접대, 수익구조재화, 음식/음료, 숙박, 개인서비스, 자동차
이탈리아	자동차, 비행기, 선박, 모터사이클 및 연료, 호텔서비스, 음식·음료
룩셈부르크	비사업용(예: 사치품, 오락, 접대)
일본	제한 없음.
네덜란드	비지정
뉴질랜드	특정한 형태의 접대 - 50% 조정
노르웨이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것
포르투갈	자동차, 연료, 여행비용, 접대, 담배, 사치품
스페인	선물, 자동차, 접대, 음식/음료, 담배, 사치품
스웨덴	특정 가치 이상의 접대, 승용차 및 모터사이클, 자동차 임대(50% 환급), 영구사용을 위한 숙박, Margin Scheme Goods
스위스	접대, 125cc 이상의 모터사이클 취득 및 유지, 항해보트 및 모터보트, 스포츠용 비행기, 하숙 및 음료에 대해서는 50% 비용환급
영국	자동차, 접대, 자동차 임대 50%

자료: 홍범교 외,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다. EU국가의 금융그룹에 제공하는 부수 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

### 1) VAT Group

기업들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 거의 모든 종류의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관리업무이다. 특히, 세계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군의 기업군 내에 공동용역센터를 설립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그 예에 속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경제적 단일체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EU국가 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 8개국이 Fiscal Unity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VAT Group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규정 기술상 EU Directive는 VAT Group에 관한 규정과 Fiscal Unity의 규정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 <EU의 관련 규정>

재무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자들은 서로 법적으로 별개의 개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 있다.<sup>8)</sup>

## 2) EU국가의 금융그룹에 제공하는 부수 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

EU 부가가치세 지령에 면세사업자인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자료처리 자회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VAT Group에 관한 규정상 그룹 설립의 주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EU의 관련 규정>

면세용역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스스로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그들과 독립된 단위(Groups)를 형성하

---

8) Title IV. Taxable Persons  
article 4,

1. ... Subject to the consult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9, each Member State may treat as a single taxable person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who, while legally independent, are closely bound to one another by financial, economic and organizational links.

고, 당해 단위가 그 면세기업들에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해 면세한다.<sup>9)</sup>

개별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금융관련 부대용역을 면세하고 있으며 VAT Group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들의 그룹이 그 그룹의 구성원에 제공하는 용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 1)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만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 2) 그 그룹의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공동경비에 한정한다.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VAT Group(Fiscal Unity, Organschaft)을 가지고 있다(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제2조 사업자).

- 1) 통합의 구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자회사가 형제 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

9) EU Directive article 13 exemption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B. Exemptions for certain activities in the public interest

1. Without prejudice to other Community provisions, Member States shall exempt the following under conditions which they shall lay dow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correct and straightforward application of such exemptions and of preventing any possible evasion, avoidance and ab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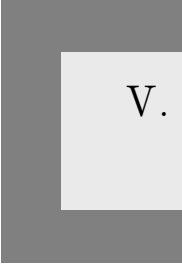
(f) services supplied by independent groups of persons whose activities are exempt from or are not subject to value added tax,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ir members the services directly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their activity, where these groups merely claim from their members exact reimbursement of their share of the joint expenses, provided that such exemption is not likely to produce distortion of competition.

## 2) 통합의 구체적 기준

- 재무적 통합: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의결권을 과반수 이상 보유
- 경제적 통합: 피지배회사가 지배회사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지배회사의 한 부서와 같은 경우
- 조직적 통합: 지배회사의 의지가 피지배회사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경영진이 동일한 경우 등)

네델란드에서는 금융관련 부대용역이 면세되는데, 금융서비스와 대부분의 은행서비스가 면세된다. 네델란드에서도 VAT Group의 개념이 있으며, 금융그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무, 경제적, 조직적 관점에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Fiscal Unity로 취급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Fiscal Unity는 Independent Entity로 간주되며, Fiscal Unity 내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Fiscal Unity의 개념은 법인세에서도 적용된다. 재무적 통합에 있어서는 의결권의 50% 미만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높을 경우 법원이 VAT Group의 성립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한다. 이는 주주 구성, 이사회 구성, 위험부담 등 구체적 사정과 상황을 감안한다.

벨기에에서는 Belgian VAT Code Art.4 §2를 따르면 몇 가지의 독립된 법적 단위(Independent Legal Entity)의 그룹은 하나의 VAT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Royal Decree)에 위임하나, 현재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동 조항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VAT Group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Cost Sharing Agreement를 통해 EU Directive Art.13A(1)f와 Royal Decree no 43(1991-7-5)에 의하여 공동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V.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검토





금융기관은 핵심적 활동 측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금전대차 기관이며 금융기관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대출이자 와 예금주에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된다.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 확장을 통하여 통화를 창조하며, 금전을 대출하여 대출받은 자로부터 이자를 수 취하는데, 만약에 이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은행은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고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공제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방법은 외형적으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방법과 큰 구조로 보아 다른 점은 없다.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우선 금융서비스 중의 핵심인 자금대역서비스의 대가인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이다. 따라서 먼저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으로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 1.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검토

### 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

이자, 임금, 이윤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 그 자체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논지가 있다(최명근(2000), 안창남(2002)). 다른 한편 종업원의 근로활동과 유사한 기능의 활동을 외부로부터 아웃소싱하는 경우(독립적·전문인적 용역, 용역대행업체의 활동 등)에 기능적·본질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으나 전자는 부가가치를 구성하고 후자는 외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므로 동 업체의 부가가치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부가가치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활동이나 용역의 기능적·본질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이나 용역의 조달 원천을 사업체 내부에 두느냐 혹은 외부에 두느냐의 거래형식적 문제에 있는 것이다(외부거래 및 내부거래). 따라서 이자의 경우도 외부로부터 제공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 나. 과세대상으로서의 이자

일군의 학자들이 가지는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자는 미래의 소비를 현재의 소비로 바꾸어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만 작용(Shoup(1947), Steuerle(1985))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소비에 과세하는 것인데 이자나 돈 그 자체는 재화도 용역도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Chia and Whally(1999),

Grubert and MacKie(2000), 이창희(2002)).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매출액, 매입액과 다르며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이자의 흐름 속에 숨어 있으며, 수입이자로 나타나는 금액은 사실 이자에 차입자부담 용역대가를 더한 것이고, 지급이자로 나타나는 금액은 이자에서 예금주부담 용역대가를 뺀 것으로 파악한다(Poddar and English(1997), 이창희(2002)).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거래 당사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는 대가로서 이자를 지불하는 한 미래의 소비를 현재의 소비로 바꾸어 주는 것도 당사자의 효용을 증가시켜 주는 행위이고, 이의 대가인 이자는 원천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앞서 자동차 구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이중과세는 과세되는 다른 비금융서비스(예를 들어 교통서비스, 저장서비스 등)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 회계 및 세무서비스도 직접 소비대상 재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재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상응하는 것이므로 금융서비스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또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투입물(Real Resources and Financial Services)에 대하여 과세하여야만 모든 재화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Auerbach and Gordon(2002)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부가가치를 ‘매출액·매입액’이라는 틀로 맞추자면 이자의 흐름 속에 숨어 있는 용역대가가 매출액에 해당하고 매입액은 따로 없는 것이라는 이창희(2002)의 지적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2002)는 이 용역대가를 따로 추려낼 방법

이 없는 이상 은행을 다른 사업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함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은행은 고객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거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거래는 자금을 사용하게 해 주는 서비스(미래의 소비 대신에 현재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줌), 두 번째 거래는 대출 및 예금과 관련하여 고객의 위험부담을 줄여 주고 고객마다 다른 예금 및 대출의 기간이나 금액들을 서로 맞추어 주는 서비스 거래이다. 첫 번째 종류의 거래에서 은행은 대출 고객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나 예금고객에게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며, 두 번째 종류의 서비스에서 은행은 예금고객이나 대출고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예금이자는 첫 번째 종류의 서비스의 대가에서 두 번째 종류의 서비스의 대가를 뺀 것이며, 대출이자는 첫 번째 종류의 서비스 대가와 두 번째 종류의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회사가 냉장고를 팔 때 판매 후 일정기간에 대하여 A/S를 제공하는데 냉장고의 판매가격에는 이 서비스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계산서에는 냉장고 가격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 예금이자와 대출이자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 대가가 섞인 것이라면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예금이자의 경우 두 가지 거래가 서로 상쇄되는 방향의 거래라는 것이 차이점인데 그것 때문에 과세나 면세를 달리 결정할 이유는 없다.

## 다. 시간선호에 대한 교란효과

이자에 대한 과세는 기업이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매입세액공제 받으므로 대출이자율이나 대출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대출이자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자금수요의 가격탄력성 정도에 따라 대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출이자율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개인 소비의 시간적 선호에만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지불하는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10%를 과세하는 것과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할 것이다.<sup>10)</sup> 따라서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는 현실에서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만큼 경제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해도 저축 측면에서는 개인이나 면세사업자가 저축하는 경우 은행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저축이자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므로 저축저해효과가 없다.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저축이자를 기업에 지불하고 기업은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나 은행은 이를 환급받으므로 아무런 경제적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0)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원천징수의 법률적 귀착은 전자의 경우 이자지급자, 후자의 경우 이자수취자로서 각각 다르나 경제적 귀착은 전자와 후자 모두 동일하게 이자율에 대한 자금공급 및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 라. 금융기관의 경쟁력

이자 등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해 과세한다면 국내에 소재하는 국내 및 외국자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과세하므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

외국소재 금융기관과의 경쟁 관계에서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자 별로 구분해 볼 때 경우에 따라 국내 소재 금융기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때 국내에서만 이를 부과한다면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국내소재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다.

금융서비스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소재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므로 외국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비과세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수입하는 용역에 대하여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하므로 과세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용한다.

## 마. 분배 역진성 문제

이자에 대한 과세가 소득계층별로 어떤 세 부담을 유발할 것인가?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고소득층일수록 지출 비중은 낮아지므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자비용지출

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래의 <표 V-1>은 도시근로자 가구를 소득 10분위별로 구분하여 총수입, 총지출, 소득 및 개별 소비지출을 제시하고 있다. 대출이자는 도시가계연보에서 따로 제시되지는 않고 기타 비소비지출 항목의 하나로서 총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 항목에는 대출이자 이외에 벌금·과태료 등 부담금과 교육비 해외송금, 다른 가구를 위한 생활비 보조금 등 3개 항목이 같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타 비소비지출 항목을 대출이자의 대리변수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여기서는 이를 통하여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본다.

<표 V-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소득, 총지출 및 비소비지출

(단위: 천원)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총수입(a)	6064	2228	2904	3827	4443	5235	5633	6533	7482	9262	13088
소득(b)	2940	782	1404	1786	2093	2388	2725	3138	3674	4421	6986
가계지출	2281	1078	1401	1646	1857	2011	2158	2447	2742	3144	4320
소비지출	1937	995	1268	1469	1637	1752	1884	2093	2287	2601	3379
비소비지출	344	83	132	177	219	259	275	355	455	543	942
기타 비소비지출(c)	117	39	55	67	81	91	87	118	148	166	314
c/a	0.019	0.018	0.019	0.018	0.018	0.017	0.015	0.018	0.020	0.018	0.024
c/b	0.040	0.050	0.039	0.038	0.039	0.038	0.032	0.038	0.040	0.038	0.045

주: 총수입은 동시에 총지출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003.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타 비소비지출은 가계의 총수입과 소득이 높아져도 그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일반

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세 부담에서 역진적 성격을 보이는 데 비해 대출이자(기타 비소비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비례세적인 성격을 보인다.

양적으로 보면 2003년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 가계지출은 월 평균 228만원 정도이며 이중 기타 비소비지출은 약 12만원으로 그 중 이자지출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 2.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가. 은행의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

이자 이외의 은행의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이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세에 찬성하는 논리가 더 우세하다. 이미 이자에 대한 과세 논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같은 논리로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과세가 타당하다.

게다가 자본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므로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과세가 이자나 다른 분야로 전가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과세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자와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자에 비과세하는 경우 과세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으며 제공하는 119종의 서비스는 상당부분 그 대가의 지급이 이자와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이외의 여·수신금융기관의 서비스도 은행에 준하여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 나. 보험

보험용역의 경우 과세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는 보험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주된 서비스가 무엇이나는 것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위험의 공동화(Risk Pooling)와 관련한 금융중개서비스(Financial Intermediation)이며,

저축성기능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이자에 준하여 과세 및 면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장성 기능만을 떼어 놓고 보면 보험은 본질적으로 보험사의 위험공동화(Risk Pooling) 행위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보험계약인이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된다. 우발적 위험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보험은 직접적 소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세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에 의하여 면세되는데,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뉴질랜드와 같이 Cash-Flow 방식에 의하여 보장성보험 프리미엄에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보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는 저축성 기능이 강하며 노후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강제하는 보험(연금보험), 보장성보험이나 사회안전망 확보(실업보험, 의료보험)를 위하여 혹은 다른 사유(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로 정부가 강제하는 보험 등이 있다.

외국에는 보험에 대하여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와 달리 과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하는 보험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저율과세한다(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은 비과세하고, 화재보험은 11%의 세율로 과세).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보장성보험은 보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국가가 강제가입을 규정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본질적 보험용역 이외에 보험계리·손해사정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용역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서비스의 수요자가 보험회사이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보험회사의 자회

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면세사업자라면 자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아웃소싱 받는 것이 동일한 서비스를 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부가가치세만큼 비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 다. 증권, 선물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

증권회사의 경우 투자자는 본인 명의로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증권회사는 투자자 또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게 중개수수료 기타 용역대가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또, 증권사가 증권매매 활동과 관련해서 위탁매매든지 자기매매든지 간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서비스에 부과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전환하고 소비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증권거래세가 존재하는 현행제도 하에서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선물을 포함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유가증권매매와 동일한 맥락에서 취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증권거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는 더욱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만기에 실물인도가 이루어지는 상품선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유사거래의 과세체계 간 일관성을 고려할 때, 현행 증권거래세가 존재하는 한, 파생상품 거래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을 포함한 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 소득과세로 변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가 언제 도입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선물시장에 대해 거래세 과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용역대가는 투자자(수익자)의 자산인 신탁재산에서 바로 인출되고 용역대가가 따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과세가 어렵다.

한편, 회사형 펀드인 증권투자회사를 통한 투자라면, 증권투자회사 자체는 소득의 계산단위에 불과하며 용역제공 기능은 따로 떼어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등의 회사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런 용역제공회사의 용역대가는 따로 드러난다. 다만 이에 대한 과세는 증권투자신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기타 금융서비스: 보증서비스,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채권추심, 자산 및 채권유동화서비스

자산 및 채권유동화서비스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과세가 궁극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신기술사업 금융서비스의 경우 벤처·창업지원 측면의 고려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의 금융서비스의 경우 용역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VI.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모색



부가가치세 과세가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시행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 현금흐름(Cash-Flow)에 대한 과세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대리납부제도(Reverse-Charge-System)를 통한 것이다. 현금흐름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부가가치세제와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EU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10여 년에 걸쳐 현금흐름에 의한 과세방법의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대리납부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도 기존의 전통적인 부가가치세제와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1.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시스템의 운용원리

전통적인 Credit-Invoice-System(CIS)<sup>11)</sup>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는데 금융서비스의 경우 과세되는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자금대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는 이자 중 어느 만큼이 시간선호에 대한 대가이고, 위험할증금(Risk Premium)이며, 은행이 제공한 부가서비스인지 각 서비스 건별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현금흐름에 의한 과세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종류를 불문하고 자금차입 및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수입(차입금원금, 수입이자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로 간주하는 한편, 자금차입 및 대출에 따른 모든 현금의 지출(지급이자, 대출원금 등)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중간재 구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비거주자와의 자금거래는 과세목적상 무시되며 수입 및 지출 모두 비과세되고 환급의 대상도 아니다. 또 회수불능 채권의 경우 ‘매출’로 간주되는 대출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관련된 세금은 완전히 차감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 과세는 자연적으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사후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 Cash-Flow(CF) 과세시스템의 납세의무자에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부문의 사업과 연계되는 금융거래를 행하는 비금융기관 사업자(예컨대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소매점)도 포함된다.

---

11) 현재 VAT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VAT 과세 방법이다.



<표 VI-1> CF 과세시스템의 예

경우 1: 개인예금, 개인차입

	은행 현금유입	은행 현금유출	세금/ 공제
<b>기간 1</b>			
예금	100		10
차입		100	-10
<b>총계</b>	100	-100	0
<b>기간 2</b>			
차입금상환	100		10
차입이자	15		1.50
예금인출		-100	-10
예금이자		-7	0.70
<b>총계</b>	115	-107	0.80
<b>은행 보유 유가증권의 총가치 = 8</b>			
<b>부가가치세 = 0.80</b>			

주: 소비자 수준에서 미래 세금조정 없음.

경우 2: 개인예금, 기업차입

	차입기업 현금유입	차입기업 현금유출	세금/ 공제
<b>기간 1</b>			
차입	100		10
<b>기간 2</b>			
차입금상환		-100	-10
차입이자		-15	-1.50
<b>총계</b>			-11.50
<b>정부세입</b>			
기간 1 세금	10		
이자수익 @ 12%	+1.20		
기간 2 세금(0.8 - 11.5)	-10.70		
<b>총계</b>	0.50		

경우 3: 기업예금, 개인차입

	기업예금 현금유입	기업예금 현금유출	세금/ 공제
<b>기간 1</b>			
예금		-100	-10
<b>기간 2</b>			
예금인출	100		10
예금이자	7		0.70
<b>총계</b>	107		10.70
<b>정부세입</b>			
기간 1 세금	-10		
이자수익 @ 12%	-1.20		
기간 2 세금 (0.8 +10.7)	11.50		
<b>총계</b>	0.30		

주: 1) 개인차입자에 대한 은행서비스의 가치 = 10%

2) 개인(가계)은 부가가치세 망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금융기관은 매입세액의 완전한 공제가 허용됨.

현금흐름에 의한 과세기 금융기관과 사업자 간의 거래는 정확하게 서로 상쇄되므로 그 거래에서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모두 기업의 매입세액으로서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에서 공제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현금흐름 과세는 또한 가계의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가계에 대한 서비스 공급의 가치는 현금의 수입에서 지급액을 공제한 순 현금의 흐름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곧 현금흐름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 2. Cash-Flow(CF) 과세시스템에 대한 평가

### 가. Credit-Invoice-System(CIS)보다 우월한 특성

우선 CF 방식은 금융서비스 대가(이자)에 포함된 자금의 시간가치에 해당하는 요소를 특별한 조정장치 없이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CIS 방식에서는 금융서비스 대가를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에 대한 대가적 요소와 시간가치적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CF 방식에서는 B(Borrower)로부터의 수입이자 와 D(Depositor)에 대한 지급이자의 차이에 대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중개기능의 대가적 요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처럼 된다.<sup>12)</sup>

다음으로 CF 방식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누적효과(Tax Cascading Effect)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자신들이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또 CF 방식은 부가가치세의 국제간 과세원칙인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리고 CIS 방식의 과세와 완전히 합치된다. 결론적으로 CF 방식은 가계의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

12) 다른 한편 금융기관의 차원에서는 중개기능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예금차원에서는 시간가치적 요소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로는 중개기능적 요소와 시간가치적 요소의 일부가 과세대상이다. 그리고 차입자가 기업, 금융기관, 개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 나. 문제점

그러나 CF 방식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자금을 차입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차입시 차입금이 ‘과세매출’로 간주되는 현금수입을 의미하므로 차입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중에 자금을 상환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차입 당시의 과중한 세 부담은 궁극적으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하도록 함으로써 자금부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현금흐름 과세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할 때나 세율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금흐름 과세는 특정한 건의 대출이나 예금과 관련된 모든 현금의 흐름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어야만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만약 현금흐름 과세를 도입하기 이전의 현금출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이후의 현금흐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적절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제도도입 이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수취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현금의 유입에 대해 매출세액을 과세하지 않은 반면 그 예금인출시에는 현금흐름에 의한 과세가 적용되어 인출에 대한 과세환급을 한다면 이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환급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유사한 문제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또 비금융사업자의 경우 CF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금융거래의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여 납세순응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그 외의 문제점으로는 파생금융상품(Hybrid and Derivative Securities)에 관한 것과 개인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의 수입금융서비스

(Imported Financial Services by VAT Exempt Households and Non-profits Institutions) 취급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지분과 부채의 성격을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지분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부채에 따른 현금지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시스템하에서 혼선이 야기된다. 금융서비스를 개인이나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현재 비금융서비스의 수입에 적용되는 대리납부제도(Reverse-Charge-System: Self-Assessment-System)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금흐름 과세의 기본형은 이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금흐름 과세는 은행, 보험, 파생금융상품을 불문하고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비금융부문에 대한 기존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제와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므로 기본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TCA 방법을 통한 Cash-Flow 시스템 과세의 보완

#### 가. TCA 방법을 통한 CF 과세방식의 기본적 작동원리

EU에서는 현금흐름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세계정(TCA: Tax Calculation Account)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방법은 현금흐름 방식이 갖고 있는 자금차입 초기의 세 부담 집중 문제, 정책변화(부가가치세 세율 변화)시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조세이연 계정을 통해 특정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장기에 걸쳐 현금의 입출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각 거래별로 조세계정(TCA)을 만들어 현금의 흐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자본거래(융자금 등)에 대한 세금을 발생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종료된 이후 남게 되는 순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TCA 방식에 의하면 자본거래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현금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해서는 세금이 연기된다. 연기된 세금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간선호도를 반영하여 이자가 계상되며, 최종적으로 자본의 흐름이 역전될 때 이전과 반대되는 현금의 흐름에 의해 상쇄된다. 예를 들면, 자금을 대출(예금을 수취)한 경우 조세계정에 자금대출(예금수취)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세금)이 계상되며, 그 계상된 환급금(세금)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자가 부가된다. 최종적으로 자금이 상환(예금이 인출)되면 원금에 대한 환급금(세금)은 반대방향으로의 현금흐름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환급금)에 의해 상쇄된다. 궁극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세금(환급받는 환급금)은 수입이자(지급이자)에 대한 세금(환급금)

에서 이연된 환급금(세금)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 것과 같게 된다.

<표 VI-2> TCA 시스템의 예

경우 4: 은행차입의 TCA

	금액	TCA
차입	(100)	(10)
TCA 비율	-	(1.2)
이자	15	1.5
차입금 상환	100	10
차입금 결산가치	-	-
<b>순 세금</b>	-	<b>0.3</b>

경우 5: 은행예금의 TCA

	금액	TCA
예금	(100)	(10)
TCA 비율	-	(1.2)
이자	(7)	(7)
예금인출	(100)	(10)
예금 결산가치	-	-
<b>순 세금</b>	-	<b>0.5</b>

경우 6: 은행차입의 TCA(실행시 개시 잔액 조정을 추가)

	금액	TCA
차입금	(100.00)	(10.00)
개시 잔액	(107.72)	(10.72)
TCA 비율	-	(0.63)
이자	15.00	1.50
차입금 상환	100.00	10.00
차입금 결산가치	-	-
<b>순 세금</b>	-	<b>0.15</b>

TCA 시스템은 이와 같이 현금흐름에 기초한 방법으로서 순수한 현금흐름 방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차입 초기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변화에 따른 이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TCA 계정을 만들 때 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제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세 부담을 계상할 수 있으며, 제도도입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기입하고 세 부담을 계산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TCA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또 기준이자율(Indexing Rate)과 제도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채무의 평가가 필요하다.

TCA 방식에 있어서 기준이자율은 B(Borrower)와 D(Depositor) 사이의 마진을 분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환급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TCA 계정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기준이자율을 가지고 정부는 조세계정의 잔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이 없었을 상황과 비교하여 지불하거나 받는 액수를 계산한다. 마진을 나누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준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적 요소나 위험분산적 요소(Risk Premium)를 제외한 순수이자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기성 재무성채권의 이자율이 기준이자율에 가장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 재무성채권의 이자율이 변화하므로 기준이자율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만일 금융기관의 대출 및 예금이자율이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다면 D와 B에 분할되는 마진이 기준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 기준이자율을 바꾸는 빈도(Frequency)에 따라 순응비용은 좌우된다.

제도도입 초기와 세율변화시에는 채권은 이자를 감안하여 재평



가되어야 하고, 채무는 대손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나. TCA 방식의 문제점

TCA 방식은 기본형 CF 방식의 과세시스템이 가지는 두 가지 큰 문제, 즉 부가가치세로 인한 초기의 자금부담 문제와 CF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할 때나 세율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 그러나 TCA 방식은 비금융사업자들이 TCA의 실행을 위하여 그리고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납세순응비용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TCA 방식은 기준이자율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갖는다. 기본형 CF 방식에서는 기준이자율이 드러나지 않아도 작동하지만 TCA 방식에서는 B와 D 사이의 마진 분할 및 TCA 계정의 잔액에 대한 이자계산을 위하여 기준이자율이 필요하다.

## 4. Truncated TCA

TCA 방법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사업자들이 모두 개별 거래에 대해 TCA를 작성해야 하므로 납세순응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만 TCA를 만들고 각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TCA에 나타난 각 사업자의 세 부담, 즉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Truncated TCA라고 한다. 하지만 Truncated TCA에서도 기준이자율의 선택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

## 5. EU에서의 Truncated TCA에 대한 실험적 시도 및 평가

EU는 1995~1998년에 유럽의 6개 국가에서 10개의 대형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TCA 시스템을 적용하는 실험을 하였다. 대상기관은 6개의 은행과 3개의 보험회사, 1개의 증권회사였는데, 이 실험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첫째, TCA 시스템에서는 이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은행간 거래에 대한 단기금리가 모든 분야에 고루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위험할증금(Risk Premium)과 관련된 것인데,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현금흐름 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환가능으로 판정되었을 때 현금의 지출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허

용함으로써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다.

실험연구에서 드러난 점은 이때 부(-)의 세금, 즉 공제를 정(+)  
의 세금과 대칭적으로 간주하여 공제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전액 공  
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  
연구는 TCA 방법이 개념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부  
가가치세를 금융부문에 적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입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서비스의 공급주체인 금융기관은 TCA 및 CF  
과세시스템에 대해 아직 우려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  
한 우려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과 고객 및 컴퓨터 시  
스템의 적응 문제였으나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주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계산된 세금이 동  
거래로부터 금융기관이 확보한 수익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킨다는  
문제이다. 이러한 정보는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해를 유발하고, 고객을 이해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하여 금융업만  
이 갖는 사정은 아니며 따라서 결정적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

현금의 흐름, TCA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금융서비  
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EU 및 관련 학자들의 노력과 성과는 아직은 EU의 정책입  
안자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동 제도는 아  
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sup>13)</sup> 그러나 EU 및 OECD에서는 계속  
이에 대한 논의가 중지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

13)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서비스 수요  
자(개인)가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데 대한 정치권의 반대, 급격한 변화  
에 따른 이행비용, 변화 후의 세무행정 및 납세순응비용 증가에 대한 불확실  
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 6. CF 과세방식의 대안

CF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CIS 방식과 영세율의 적용, 매입세액공제액의 추정, 기타 부가가치세제 외의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전통적인 CIS 방식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CIS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기업이나 개인고객에게 명시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매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준이 적합한 몇 가지 금융기관의 서비스(금고대여업 등)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나. 전통적인 CIS 방식하에서 영세율의 적용

뉴질랜드에서는 금융서비스의 수요자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사업자)와 면제자(개인 포함)로 구분하고 납세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에 사용된 중간재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 공급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뉴질랜드 외에 싱가포르

포르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sup>14)</sup>

이 방법은 누적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사용된 중간재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행정적 관점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다. 매입세액공제액의 추정

싱가포르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매입세액의 일정 부분만 공제하는 방법(Fixed Input Tax Recovery Method)을 적용하기도 하며, 호주에서도 유사한 방법(Reduced Input Tax Credit)을 사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앞서 언급한 특별공제의 대안으로 금융서비스의 수요지를 구분하지 않고 중간재 구입과 관련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의 일정 부분을 일괄적으로 금융기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허용하는데, 이때 일정률은 각 금융기관이 속한 업종의 평균적인 공제율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한편 호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매입세액의 75%를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금융관련 세 부담의 누적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인 중간재 사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14) “Special Method”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싱가포르 GST Regulation 중 Reg. 30(2). Schenk and Zee(2004) 참조.

## 라. 총수입에 대한 과세

우리나라의 교육세와 같은 방법으로, 법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총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율(10%)보다 훨씬 낮은 세율(0.05%)로 과세한다. 우리나라 외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대출이자 수입총액에 대해 10.5%의 세율(부가가치세율 21%)로 과세한다. 보험의 경우에도 <표 V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방법은 세무행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방식의 과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서비스 수요자가 납부한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누적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 단점이다.

<표 VI-3> 보험료에 대한 과세

국 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험료세
벨 기 에	39	면세	3-9.25(보상기금: 0.25-10)
덴 마 크	30	면세	1-50
독 일	25	면세	2-15
에스토니아	35	면세	6
프 랑 스	33.33	면세	7-30(보상기금: 1.9-8.5)
아 일 렌 드	10	면세	2
이 탈 리 아	36	면세	2.5-21.25(보상기금: 1-6.5)
룩셈부르크	30	면세	4-6
네 덜 란 드	35	면세	7
오스트리아	34	면세	1-10
핀 란 드	29	면세	22
스 웨 덴	28	면세	15
영 국	30	면세	5
미 국	35	면세	3-4
스 위 스	35	면세	2.5-5

자료: Levin, M. and P. Ritter, "Taxa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in Industrial Countries," in Patrick Honohan(ed.), *Taxa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Theory and Practice for Emerging Economies*, World Bank, 2003.

#### 마. 부가방식(Addition Method)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직접 생산요소 소득을 계산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급여세를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매출액의 90% 이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매출인 기관의 경우 종업원 급여의 4.25~1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세(Payroll Tax)로 납부한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과세표준에 종업원 급여뿐만 아니라 이윤요소를 첨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보완하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프랑스에 비해 좀더 부가가치에 근접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은 앞의 총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 비해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를 면세자와 과세자로 구분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발생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하고 그 세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를 증폭시킨다는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

#### 바. 공제방식(Subtraction Method)

부가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총수입에서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도 부가방식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 7. 대리납부제도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대리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그 자신의 사업의 매출과 매입액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국가들이 수입서비스의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입서비스의 경우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리납부제도를 통하여 수입서비스와 국내사업자에게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불균형이 제거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에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을 국내에 소재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루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시스템이 금융서비스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 예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의 책임이 예금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 미루어진다. 따라서 은행은 부가가치세 청구서를 본인이 구매한 투입재(이 경우 예금)에 대하여 발부하고 이것으로 스스로의 매출세액(대출금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다.<sup>15)</sup>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대리납부제도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방식보다 납세준용비용(Tax Compliance Cost)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방식에서는 비금융기관인 기업이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모든 거래의 현금흐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납세준용비용이 매우 높다.

---

15) Zee, H. H., "A New Approach to Taxing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under a VAT," *National Tax Journal*, Vol.58, 2005, pp.77-92.



하지만 대리납부제도는 비금융기관인 기업에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납부제도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아직 이론적 논의 단계에 있으므로, 구체적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과세당국이 포함된 전문가 모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V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 1.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지금까지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 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할 때 우리나라에서 전체 금융서비스<sup>16)</sup>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면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sup>17)</sup>

- 면세 분야 축소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제도 정착: 전체 경제의 과잉부담 감소
-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대

- 
- 16) 전체 금융서비스라고 할 때 증권거래와 관련한 서비스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증권회사가 수수하는 수수료가 이에 해당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증권거래액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에 추가하여 증권거래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이중과세로 보는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 증권거래세는 우리나라에서 증권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양도차익 과세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17)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전체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교육세는 비과세) 이외에도 전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교육세 과세)하는 방법과 이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교육세 과세)하면서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교육세 비과세)하는 방안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전체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교육세 과세)의 경우, 영세율은 세율을 0%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의미를 가지므로 세수기반은 줄어들다 그 외에는 위의 전체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 즉 면세 분야 축소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전체 경제의 과잉부담 감소)되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이 축소되며, 교육세 과세 기반이 축소되고 부가가치세의 상호대사 기능강화로 전체 세제(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의 탈루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이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교육세 과세) 및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교육세 비과세)의 경우는 혼합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

- 교육세 과세 기반 축소
- 부가가치세의 상호대사 기능강화로 전체 세제(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의 탈루 방지에 도움
-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 및 이에 대한 수요의 감소(금융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이 대안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대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세수규모만큼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여 전체적으로 세수중립적인 제도개편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단순히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만 확대하는 방안이 그 두 가지 대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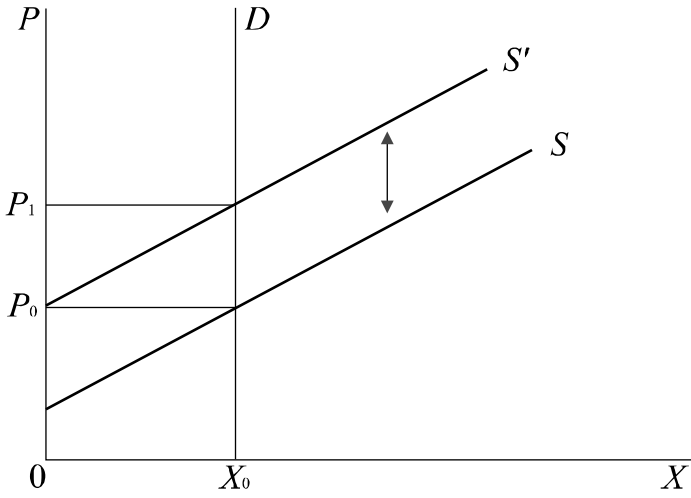
## 2. 부가가치세 과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일반이론

상품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소비에 대한 과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은 납세비용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선택한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는 세액을 가격에 전가(Forward Shifting)시키려고 할 것이나 그 전가 가능성은 수요탄력성의 크기에 좌우된다. 가령 쌀이나 옷 같은 생필품은 세금으로 인해 값이 올랐다고 해도 소비자가 소비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가격이 인상됐다고 해도 그 소비량은 거의 일정하다. 극단적으로 수요탄력성값이 0에 가까운 경우 부가가치세는 100% 가격에 전가되어 모든 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 <그림 V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요곡선이 X축에 수직으로 나타나는 경우(수요탄력성의 값이 0)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 100% 전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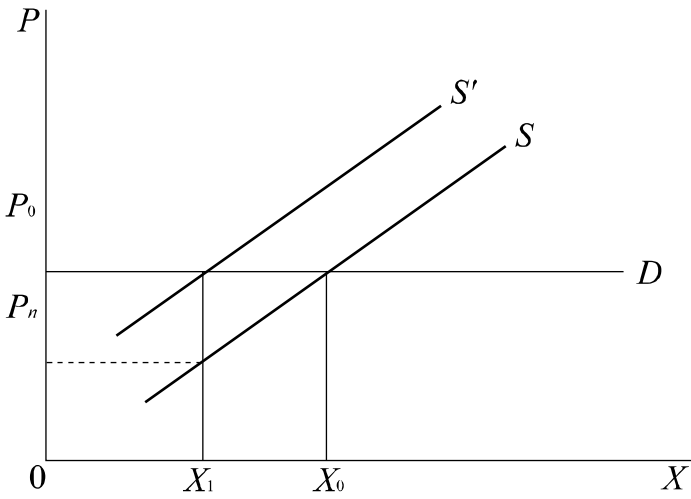
한편 물건값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가 급감하는 재화가 있다(사치품). 극단적인 예로 수요탄력성값이 X축에 수평인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전액 공급자부담이 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아래 <그림 VII-2>에서처럼 해당 상품의 가격이  $P_0$  이상이 되면 수요가 전무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전부 부담하게 되고 순수입이 감소한다.

수요탄력성은 값이 0 또는  $\infty$ 의 극단적인 경우보다는 이 양극의 사이에 있는 경우가 현실적이며 따라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담을 나누는 상대적 비율은 수요탄력성에 좌우되며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VII-1> 수요탄력성값이 0(생필품)



<그림 VII-2> 수요탄력성이 무한대(사치품)





### 3. 실증분석모형<sup>18)</sup>

#### 가. 개요

본장에서는 금융산업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경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계산가능 일반균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uerbach and Gordon(2002)을 비롯한 기존의 외국문헌들은 대부분 간단한 부분균형모형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일반균형모형을 통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효율성을 분석한 문헌은 Chia and Whalley(1999)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모형은 생산부문 및 해외부문이 없는 정태적 교환경제에서 상품거래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금융서비스로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계산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중개에 대한 정교한 모형을 생략하고 금융산업을 금융서비스의 생산부문으로 간주하였고, 정부, 비금융생산부문, 해외부문 등을 포함한 동태적 CGE 모형으로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세가 금융산업에 부과되면 나타나는 효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금융산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입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었다. 따라서 금융산업에 부가가치세가

---

18)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조경엽(2005)의 모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분의 모형 및 설명은 조경엽(2005)의 것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부과될 경우 금융산업은 비금융산업과 같이 투입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환급받는 대신 금융서비스에 대한 최종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최종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돼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금융산업에서 사용하는 중간재화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생산비용 감소효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가격이 인하돼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효과는 비금융산업에서 발생하게 된다. 비금융산업은 이러한 세계개편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금융산업에서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가 가격이 높아지는 금융서비스 대신 비금융서비스로 소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금융산업의 생산은 증가하게 된다.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태적인 과급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이 적용된 이전과 이후에 걸쳐 일어나는 동태적인 과급효과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세율변화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시점을 달리한다든가, 미래의 소비변화에 대비해 저축의 시점을 달리하는, 시점간 행동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1년을 단위로 하여 2006년부터 2030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에서 경제주체들은 완전예측(Perfect Foresight)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정책변화를 예측하고 미래효용과 미래이윤의 흐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 나. 가 계

가계는 대표소비자(Representative Agent)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대표소비자는 무한의 생존능력과 미래에 대한 완전예측능력(Perfect Foresight)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계는 주어진 예산제약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효용함수( $U$ )는 시간에 대해 분리가능(Separable)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로 정의된다.

$$\max_{C, L} U(Z_t) = \sum_{t=0}^{\infty} \beta^t \frac{Z_t^{1-\theta}}{1-\theta} \quad (\text{VII-1})$$

$$s.t. Z_t = [\alpha C_t^\rho + (1-\alpha)(H_t - L_t)^\rho]^{\frac{1}{\rho}} \quad (\text{VII-2})$$

여기에서  $\beta$ 는 시간에 대한 할인율을 의미하며,  $1/\theta$ 는 시점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나타낸다.  $L_t$ 는  $t$ 기의 노동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 할당된(Endowment) 시간을  $H_t$ 라고 가정할 때 여가시간은  $H_t - L_t$ 가 된다. 최종복합소비재화( $Z_t$ )는 소비복합재화  $C_t$ 와 여가  $L_t$ 의 CES 함수로 구성된다.  $\frac{1}{1-\rho}$ 은 소비재화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을 의미하며,  $\alpha$ 는 복합소비재화 중 소비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모수이다.<sup>19)</sup>

소비자의 시점간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sum_t P_{c,t} C_t + \sum_t P_{k,t} I_t = \sum_t W_t L_t + \sum_t R_t K_t + \sum_t Tr_t \quad (\text{VII-3})$$

제약식에 나타난 가격은 모두 세후가격을 나타내며, 시간에 대

19) 가중치 모수( $\alpha$ )와 대체탄력성 모수( $\rho$ )는 수식마다 다른 표기를 사용해야 하나 서술의 편의상 이하 수식에서 모두 동일하게 표시하기로 한다.

한 할인율을 반영한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P_{c,t}$ 는 할인율을 반영한 소비복합재화의  $t$ 기의 세후가격을 의미하고,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P_{c,t}$ 는  $\frac{1}{(1+r^*)^{t-1}}P_{c,0}$ 로 정의된다. 이때  $r^*$ 는 균제상태의 이자율이고  $P_{c,0}$ 는 기준연도의 복합소비재화의 가격을 의미한다.  $P_{k,t}$ 는 할인율이 반영된 자본에 대한 투자재의 세후가격을,  $w_t$ 는 세후임금률을,  $R_t$ 는 자본의 세후수익률을 나타낸다.  $I_t$ 는 투자를 의미한다.  $Tr_t$ 는 할인율이 반영된 정부이전소득을 나타낸다. 자본은 모두 가계가 소유하고 이를 산업에 대출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하였다.

식(VII-3)은 가계의 소득은 현재가치로 환산된 노동임금수입, 자본대여로부터 얻는 수익과 정부의 가계이전소득으로 구성되고, 이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소비와 투자수요로 지출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복합재화는 가계에서 소비되는 아밍톤 재화( $XA_{c,t}$ )로 구성된다.

$$C_t = [\alpha XA_{1,c,t}^\rho + (1-\alpha)XA_{2,c,t}^\rho]^{1/\rho} \quad (\text{VII-4})$$

여기에서  $XA_{i,c,t}$ 는 가계에서 소비하는 아밍톤 복합재화(비금융산업( $i=1$ )과 금융산업( $i=2$ ))를 의미한다. 하첨자  $c$ 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재화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 다. 산 업

본 모형에서 산업은 비금융산업( $i=1$ )과 금융산업( $i=2$ )으로 구성된다. 산업에서 생산되는 최종소비재화의 복합단계는 다음과

같이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각 산업  $i$ 에서 생산되는  $t$ 기의 최종재화( $Y_{i,t}$ )는 노동·자본 복합재화와 아밍톤 중간재화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생산된다.

$$Y_{i,t} = [\alpha KL_{i,t}^\rho + (1-\alpha)XA_{i,t}^\rho]^\frac{1}{\rho} \quad (\text{VII-5})$$

여기에서  $KL_{i,t}$ 와  $XA_{i,t}$ 는  $t$ 기에  $i$ 생산부문에 투입된 노동·자본 복합재화와 아밍톤 복합재화를 의미한다. 부문  $i$ 에서 생산된 최종재화  $Y_{i,t}$ 는 수출재화와 국내소비재화로 전환된다. 또한  $Y_{i,t}$ 가 불변전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에 의해  $t$ 기의 수출재화( $XE_{i,t}$ )와 국내소비재화( $XD_{i,t}$ )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lpha XE_{i,t}^\rho + (1-\alpha)XD_{i,t}^\rho]^\frac{1}{\rho} = Y_{i,t} \quad (\text{VII-6})$$

식 (VII-5)에 나타난 노동·자본 복합재화는 다음과 같이 노동과 자본의 CES함수로 구성된다.

$$KL_{i,t} = [\alpha L_{i,t}^\rho + (1-\alpha)K_{i,t}^\rho]^\frac{1}{\rho} \quad (\text{VII-7})$$

$L_{i,t}$ 와  $K_{i,t}$ 는  $i$ 부문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과 노동은 부문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각 부문은 동일한 가격으로 자본과 노동을 구매할 수 있다. 균형에서 총노동 공급  $L_t$ 는 산업별 노동수요의 합  $\sum_i L_{i,t}$ 와 동일하다. 또한 총자본 공급  $K_t$ 도 산업에서 수요하는 자본의 합  $\sum_i K_{i,t}$ 와 일치한다.  $t+1$ 기의 자본량은 감가상각  $\delta K_t$ 를 제외한  $t$ 기의 자본량과 투자( $I_t$ )에 의해 형성된다. 각 산업별 감가상각률은  $\delta$ 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K_{i,t+1} = (1 - \delta)K_{i,t} + I_{i,t} \quad (\text{VII-8})$$

식 (VII-5)에 나타난 아밍톤 복합재화의 생성과정을 살펴보자.  $t$ 기에 생산되는  $s$ 아밍톤 복합재화  $XA_{s,t}$ 는 국내재화( $XD_{s,t}$ )와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 $XM_{s,t}$ ) 간의 불완전대체관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부문  $i$ 에서 중간재화로 수요되는 아밍톤 복합재화와 가계, 산업, 투자, 정부부문으로 분배되는 총 아밍톤 복합재화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색인  $s$ 를 사용하기로 한다.

$$XA_{s,t} = [\alpha XD_{s,t}^\rho + (1 - \alpha)XM_{s,t}^\rho]^{\frac{1}{\rho}} \quad (\text{VII-9})$$

총 아밍톤 복합재화  $XA_{s,t}$ 는 산업의 중간재화로, 가계와 정부의 소비재화로, 그리고 투자재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XA_{s,t} = \sum_i XA_{s,i,t} + \sum_c XA_{c,s,t} + XA_{inv,s,t} + XA_{g,s,t} \quad (\text{VII-10})$$

여기서  $XA_{s,i,t}$ 는  $t$ 기에  $i$  부문에서 중간재화로 사용한  $s$ 아밍톤 복합재화를 의미한다.  $XA_{c,s,t}$ 는  $t$ 기에 가계의 소비재화 생산에 사용한  $s$ 아밍톤 복합재화를 나타낸다.  $XA_{inv,s,t}$ 는 투자재 형성을 위해 사용된  $s$ 아밍톤 복합재화이고,  $XA_{g,s,t}$ 는 정부에서 소비한  $s$ 아밍톤 복합재화이다.

## 라. 정 부

정부는 각종 세금을 통해 수입을 얻고 정부소비와 가계이전( $Tr_t$ )을 통해 이를 지출한다. 정부지출과 수입과의 차이는 재정적

자 또는 정부저축으로 정의된다.  $t$ 기의 정부의 수입( $\Phi_t$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Phi_t + P_{ex,t}D_t = & \sum_k \tau_k R_k K_{k,t} + \sum_l \tau_l W_l L_{l,t} \\ & + \sum_s \tau_{vat,s} P_{xa,i,t} (XA_{c,s,t} + XA_{g,s,t}) + \sum_i \tau_{tarif,i} P_{xm,i,t} XM_{i,t} \end{aligned} \quad (VII-11)$$

여기서  $D_t$ 는  $t$ 기의 정부부채를,  $P_{ex,t}$ 는 환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을 통해 가계 또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고, 반대로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가계 또는 해외로 자금을 대출한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가격은 다음에 나타나는 무역수지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사용한다. 따라서 국제수지에 대한 가정에 따라  $P_{ex,t}$ 가  $P_{ex}$ 로 전환된다.  $\tau_k$ 는 자본소득에 대한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로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은 동일한 세율에 직면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tau_l$ 는 근로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이고,  $\tau_{vat,s}$ 는 유효 부가가치세율로서 중간재화를 제외한 최종소비재화와 수입재화에 부과된다.  $\tau_{tarif,i}$ 는 수입재화에 부과되는 관세와 수입상품세를 나타낸다.

정부의 지출( $\Gamma_t$ )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amma_t = \sum_s P_{xa,s,t} XA_{g,s,t} + Tr_t \quad (VII-12)$$

$P_{xa,s,t}$ 는  $s$ 아밍톤 재화( $XA_{s,t}$ )에 대한 세후가격을 의미한다.  $Tr_t$ 는  $t$ 기에 가계에 이전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t$ 기의 정부지출은 소비지출, 가계이전으로 구성된다.

정부예산과 관련된 옵션은 다음과 같이 기간별 예산균형과 전 기간 예산균형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Phi_t + P_{ex,t}D_t = \Gamma_t \quad (\text{VII-13})$$

$$\sum_{t=0} \Phi_t + \sum_{t=0} P_{ex,t}D_t = \sum_{t=0} \Gamma_t \quad (\text{VII-14})$$

여기에서는 단지 매기 정부지출이 변하여 정부의 예산균형이 달성되는 경우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 마. 대외거래

본 모형은 소국개방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재화의 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자본이동에 대한 제약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 번째는 고정환율제도와 같이 환율이 고정되고 해외자본이동에 의해 무역수지 불균형이 해소되는 경우이다. 소국개방모형하에서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할 경우 무역수지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um_i P_{xe,i,t}XE_{i,t} - \sum_i P_{xm,i,t}XM_{i,t} + P_{ex}B_t = 0 \quad (\text{VII-15})$$

여기에서  $P_{xe,i,t}$ 는  $i$  부문 재화의 세후수출가격을 나타내며,  $P_{xm,i,t}$ 는  $i$  부문 재화의 세후수입가격이다.  $P_{ex}$ 는 환율로서 시간에 상관없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할 때, 자본이동  $B_t$ 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sup>20)</sup>

이와는 반대로 변동환율제도와 같이 자본이동이 불변이고 환율은 변동한다면 무역수지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 따라서  $P_{ex}$ 에 하첨자  $i$ 를 생략하였다.



$$\sum_i P_{xe,i,t} XE_{i,t} - \sum_i P_{xm,i,t} XM_{i,t} + P_{ex,t} B_0 = 0 \quad (\text{VII-16})$$

고정환율제도와 달리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초기 연도의 무역수지적자( $B_0$ )가 고정되고 환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sup>21)</sup>

본 모형에서 무역수지는 환율이 변동하여 수출과 수입이 일치하는 경우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단순화하기로 한다.

#### 바. 일반균형모형의 모수

본 모형에서 사용된 모수값은 손양훈·신동천(1997), 조정엽(2000), Berstein et al.(1999), Goulder and Schneider(1999) 등 기존의 국내외 문헌이 사용하고 있는 모수값과 유사하도록 하였다.

산업부문에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에서 사용되는 모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산업부문에서 노동·자본 복합재화와 아밍톤 복합재화 간의 대체탄력성은 0, 수출재와 국내소비재화 간의 대체탄력성은 3이라고 가정한다. 노동·자본 복합재화에 대한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은 1로 가정하고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07로 가정한다. 중간재가 아닌 아밍톤재화에 대한 국내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은 2라고 가정한다. 정부부문에서 사용되는 소득세율은 1.7%, 자본세율은 6.8%, 부가가치세는 6.2%, 관세율은 8.9%로 가정한다. 가계부문의 시점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재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은 각각 0.5와 0.8로 가정한다. 그리고 소비복합재화간의 대체탄력성은 생산부문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외생변수로 결정되는 균형이자율은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0.06으로 가정하였고,

21) 따라서 환율에 하첨자  $i$ 를 첨가하여  $P_{ex,t}$ 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할인인자  $\beta$ 는 0.943이 된다. 균형경제성장률은 과거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에 근사한 5%로 가정한다.

<표 VII-1>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의 대체탄력성과 세율

생산부문		소비부문		정부부문	
대체재화	탄력성	대체재화	탄력성	항목	세율
$XD, XE$	3.0	$Z_t, Z_{t+1}$	0.5	$L$	1.7%
$KL, XA$	0.0	$C, L$	0.8	$K$	6.8%
$K, L$	1.0	$XA_1, XA_2$	0.2	부가가치	6.2%
$XD, XM$	2.0	$XD, XM$	2.0	$XM$	8.9%

## 4. 사회회계행렬

CGE 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형의 규모와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묘사하는 함수형태들을 연구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CGE 모형의 입력자료는 200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산업연관표』, 『국세통계연보』, 『기업경영분석』, 『한국통계연감』, 그리고 기존 연구로부터 수집되었다.

CGE 모형에 입력된 자료는 <표 VII-2>와 같이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 Matrix: SAM)로 요약할 수 있다. SAM은 특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경제적 거래를 보여 주고 있다. SAM에서 행에 나타난 수치는 해당 부문의 수입을 의미하며, 열에 나타난 수치는 지출을 의미한다.<sup>22)</sup> 경제 전체로 볼 때 소득과 지출이 같다는 거시순환 원칙에 따라서 행(소득 측면)과 열(지출 측면)의 합은 일치한다. 따라서 SAM은 일반균형모형이 요구하는 세 가지 균형조건(영의이윤, 시장청산, 소득균형)을 만족시킨다.

경제에서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계, 정부, 타 산업, 그리고 해외로 판매하여 받은 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지대로, 주주들에게 이윤으로, 그리고 정부에 세금으로 완전히 지출한다. 따라서 균형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영이 된다. 가계의 주 소득원은 생산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얻는 요소소득이며, 정부의 주 수입원으로는 생산요소 또는 재화 판매

---

22) 직사각형 테이블은 전통적인 SAM 테이블과 구분하기 위해 MCM(Micro-Consistency Matrix)이라 한다. 전통적인 정사각형 SAM 테이블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급 또는 수입은 양의 수로 나타나고 수요와 지출은 음의 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행과 열의 합은 항상 영(Zero)이 된다.

단계에 부과된 세금을 들 수 있다. 가계 및 정부는 이들 소득을 소비나 저축으로 지출하여 소득과 지출을 일치시킨다. 수출되고 남은 재화와 수입된 재화가 합쳐져 국내 총공급을 형성하고 총수요는 가계 및 정부의 소비와 산업의 중간재화 소비로 구성된다. 시장청산조건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된다.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요소시장 또한 공급과 수요는 임금과 자본수익률이 변동하여 일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특정 기간에 행한 경제적 거래를 통계수치로 보여 주는 것이 SAM이다. <표 VII-2>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거래를 CGE 모형구조에 맞게 구축한 SAM을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 5.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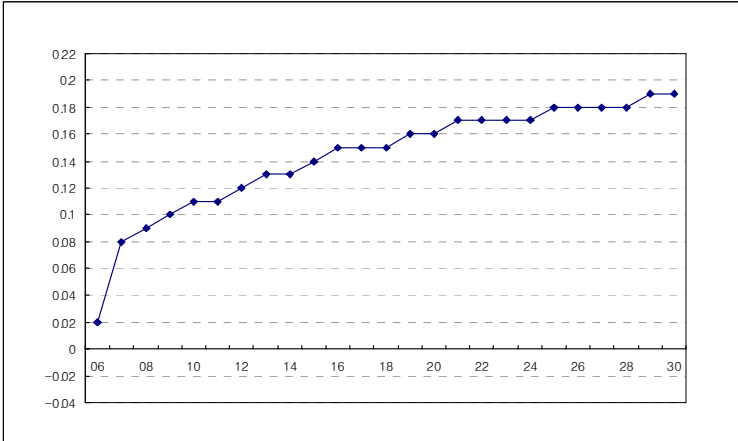
### 가. 부문별 생산량 변화

금융부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한 단위당 금융서비스의 소비가격이 상승한다.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가계 부문은 같은 양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반면에 금융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생산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융서비스 가격을 지불하고 차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한편 금융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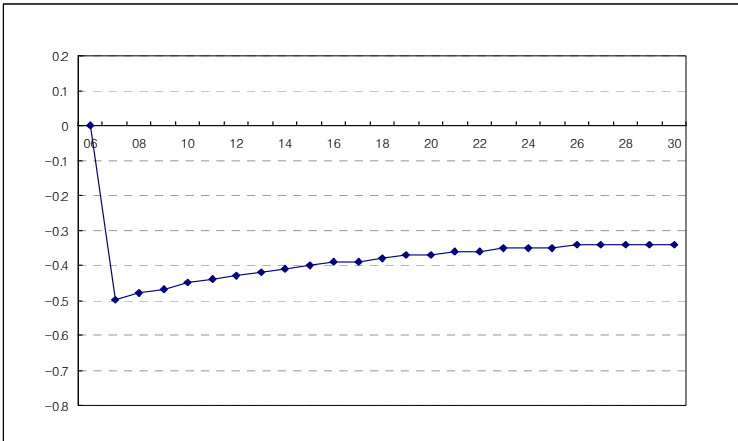
금융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직접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기에 간접효과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경제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GDP의 변화는 초기에 기준균형 대비 0.02%에서 0.08%까지 급증하였다가 이후로 매년 약 0.01%씩 증가하여 2030년까지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문의 소비는 금융서비스의 가격부담으로 인해 초기에 -0.5%까지 감소하지만 그 이후 정부지출과 금융부문을 포함한 생산부문의 투자증가로 인해 GDP가 증가함으로써 가계부문의 소비에 대한 효과로 -0.34%에 수렴하게 된다. 금융부문에서는 비노동생산요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자본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이것으로 인해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금융부문은 투자수요를 증가시킨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계소비의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비금융부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생산부문도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확장하게 된다. 생산부문의 투

자는 초기에 0.3% 증가하고 그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기준균형 대비 0.34%까지 증가한다. 정부지출은 2006년에 비해 약 2.3%가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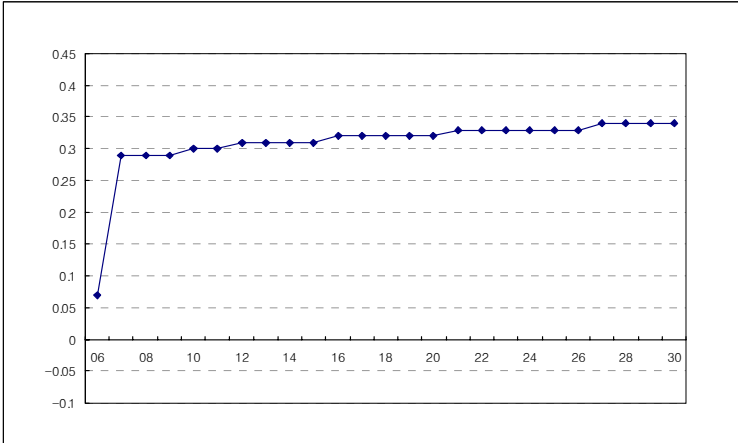
<그림 VII-3> 기준균형 대비 GDP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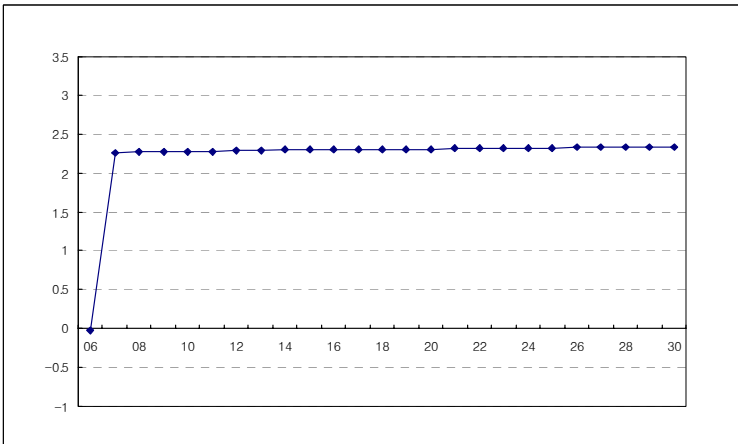
<그림 VII-4> 기준균형 대비 소비지출 변화 (%)



<그림 VII-5> 기준균형 대비 투자변화 (%)



<그림 VII-6> 기준균형 대비 조세수입 및 정부지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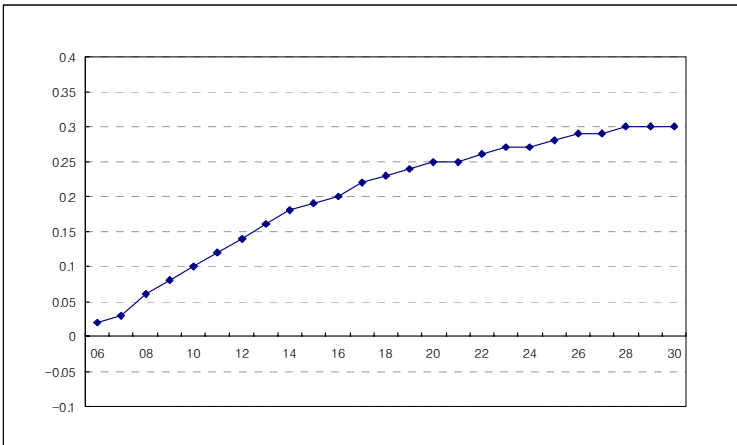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금융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가계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나 기업투자와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해 GDP에 대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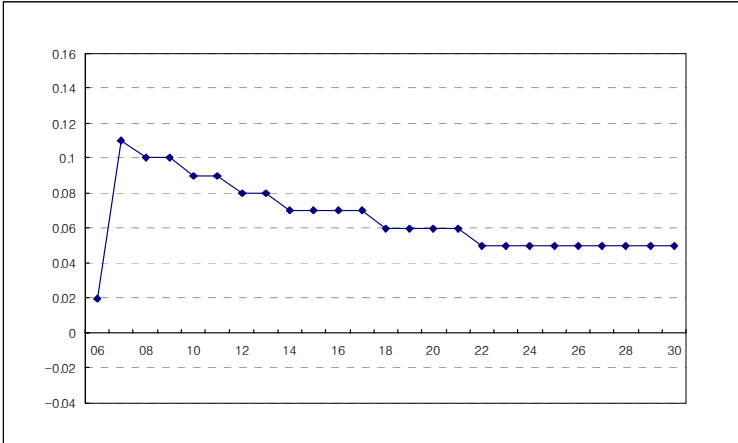
## 나. 생산요소부문의 변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자본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 0.3%까지 증가한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가계의 노동공급곡선이 하향 이동하여 균형노동량에 대한 효과는 초기에 0.11%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노동요소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그 증가분은 2022년 이후 0.05%에 그치게 된다.

<그림 VII-7> 기준균형 대비 자본량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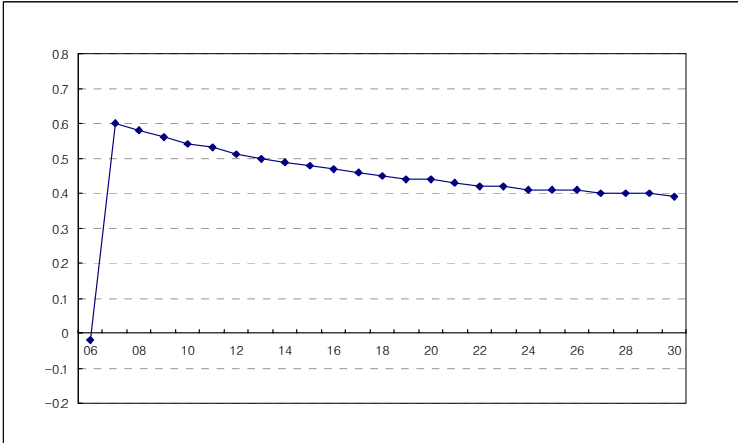
<그림 VII-8> 기준균형 대비 노동량 변화 (%)



#### 다. 가격변화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초기에는 0.6% 정도 상승하나 생산부문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점차 하락하여 0.4%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는 실질임금을 반대방향으로 변하게 하므로 실질임금은 초기에 기준균형 대비 약 0.6% 정도 하락하였다가 하락률은 -0.4%에 수렴하게 된다. 미래물가의 변화는 완전예측(Perfect Foresight) 가정에 의해 현재 금리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2007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순간적으로 2006년 약 11% 정도의 금리변화를 발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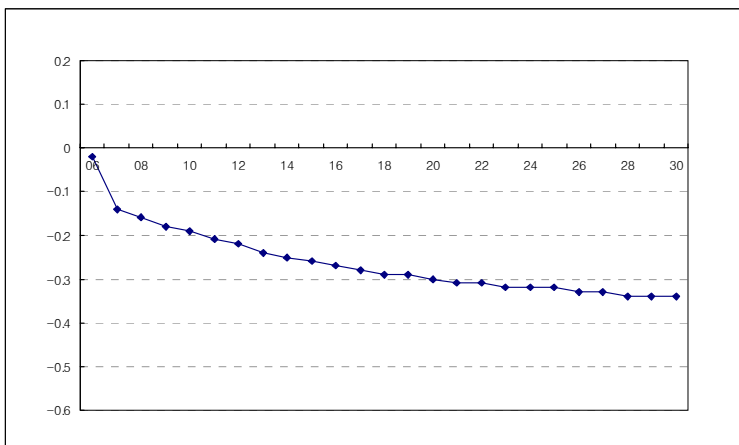
<그림 VII-9> 기준균형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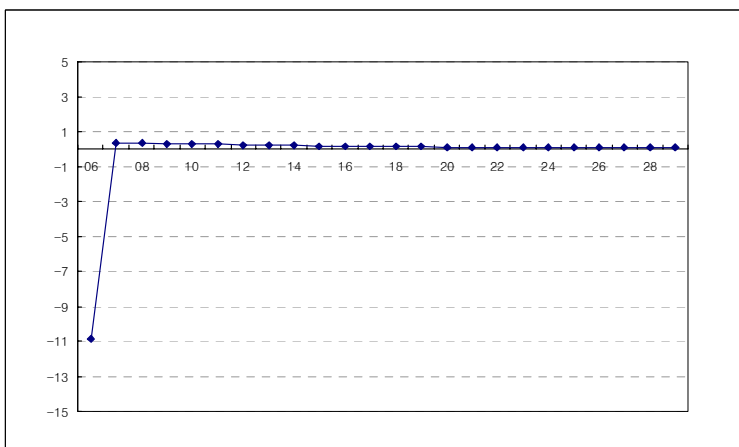
한편 금융부문의 부가가치세가 비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반면 금융부문의 요소투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므로 생산자물가지수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노동공급도 생산자물가지수의 하락에 기여하게 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초기에는 0.14% 하락하고 완만한 하락추세가 계속되어 2030년에는 0.34% 정도 하락하게 된다.

또한 GDP의 점진적인 상승에 의한 순 수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원화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여 2030년까지 기준균형대비 0.27% 정도 하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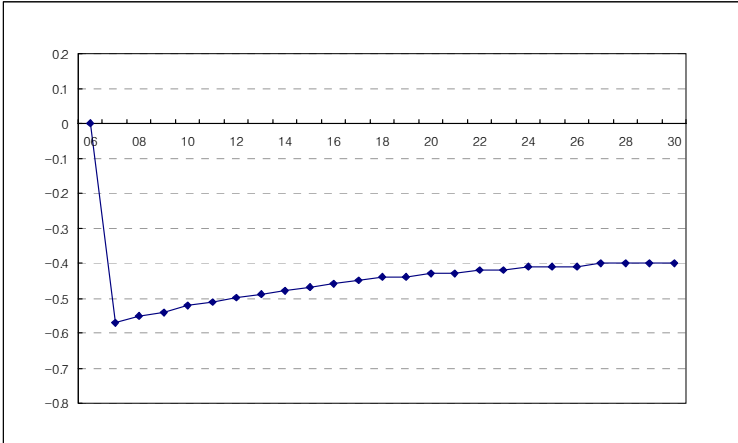
<그림 VII-10> 기준균형 대비 생산자물가지수(PPI)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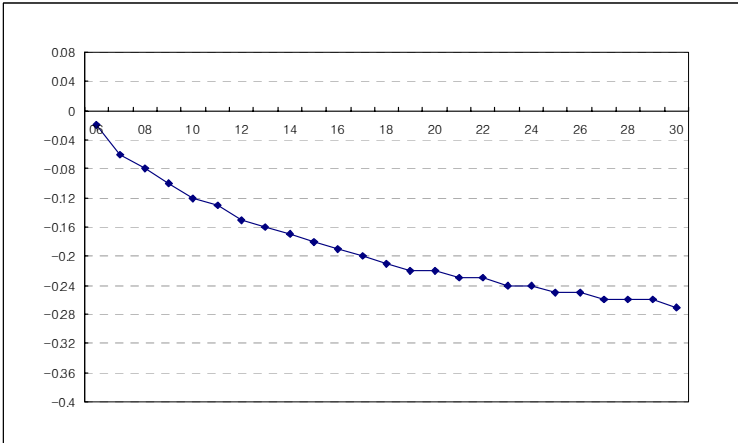
<그림 VII-11> 기준균형 대비 금리변화 (%)



<그림 VII-12> 기준균형 대비 실질임금 변화 (%)



<그림 VII-13> 기준균형 대비 환율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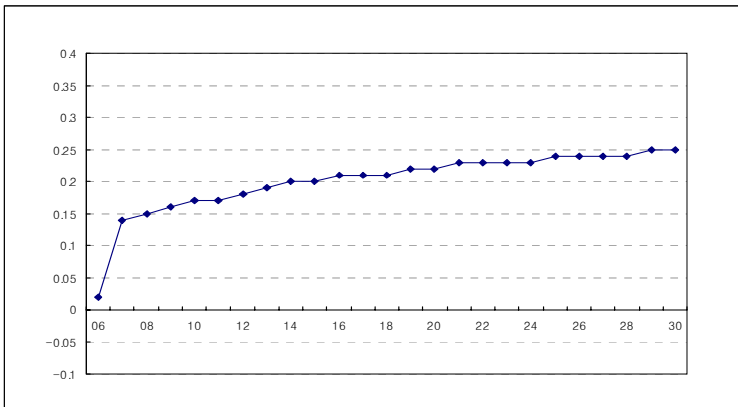


## 라. 산업별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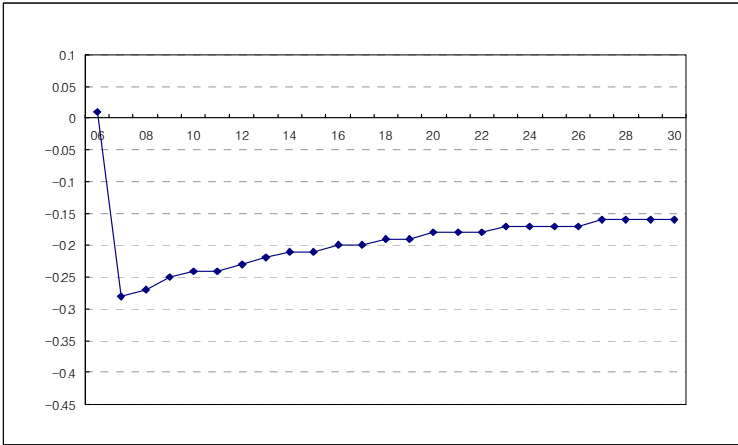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비금융산업의 요소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문에서 요소비용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가계부문은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을 부담해야 하므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생산은 초기에 0.28% 정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GDP의 증가로 그 감소분은 -0.16% 정도로 수렴하게 된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비금융산업에 나타난다. 또한 금융산업의 증가투입물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비금융산업에 대한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금융산업의 생산은 초기에 약 0.16% 증가하고 추후 재정지출의 증대에 따른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2030년 0.27%까지 상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간재생산까지 포함한 총생산량은 초기에 0.14% 증가하고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30년까지 약 0.25%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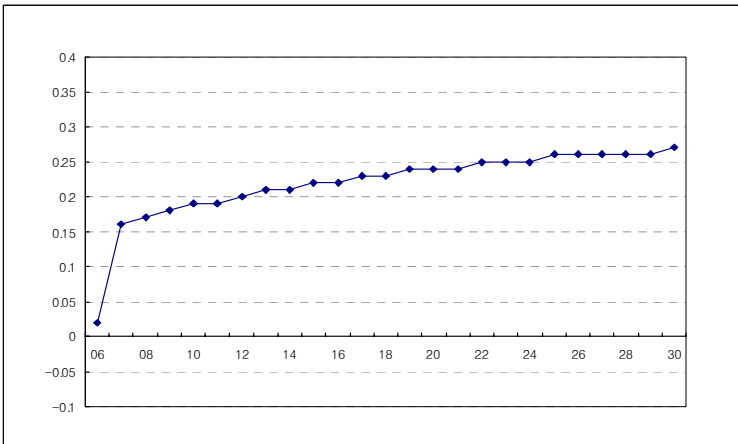
<그림 VII-14> 기준균형 대비 생산량 변화 (%)



<그림 VII-15> 기준균형 대비 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그림 VII-16> 기준균형 대비 비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 6.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제적 효과

금융부문에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부과되면 조세의 형평성은 제고되지만 금융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가계부분은 과세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부문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상쇄시킬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세수중립적 정책을 수반한 금융부문 부가가치세 과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여기에서 세수중립적 정책이란 금융부문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세수증가분을 다시 소비세 형태로 민간에 환급함으로써 세수증가분을 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정지출의 변화가 없게 된다.

### 가. 부문별 생산량 변화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우에는 소비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축소되는 대신 조세수입의 증가로 인한 정부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 전체적인 효과는 작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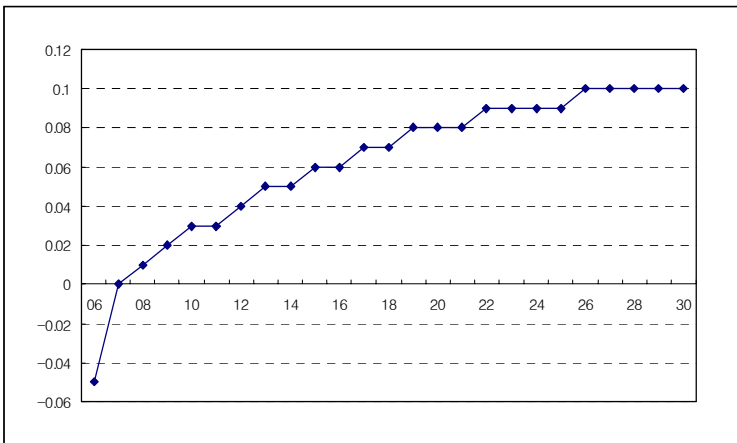
세수중립적 금융부가가치세 부과 of 최종적인 경제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GDP의 변화는 초기에 소비부문의 위축으로 기준균형 대비 0.02% 감소하였다가 그 다음해 원상으로 회복되고 2008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2026년 이후 0.1% 증가에 머물게 된다. 가계부분의 소비는 금융서비스의 가격부담으로 인해 초기에 -0.14%까지 감소하지만 그 이후 소비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계속 감소되어 2020년에는 원상회복되고 2030년에는 0.03%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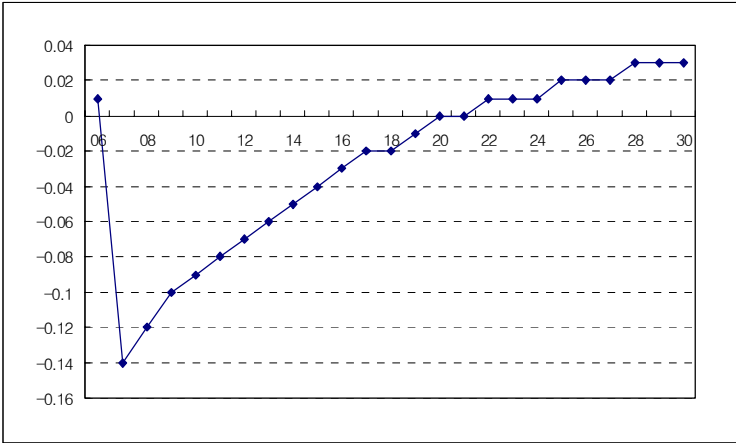
가하게 된다. 세수 비중립적 과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0.34%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에 비하면 소비부문에 대한 금융부가가치세 과세의 부정적 효과는 많이 축소되었다. 금융부문에서는 비노동생산요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자본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이로 인해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금융부문은 투자 수요를 증가시킨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가계소비의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은 비금융부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생산부문도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확장하게 된다. 생산부문의 투자는 초기에 0.15% 감소하다가 2007년에 급증하여 0.19% 증가하고 그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기준균형 대비 0.24%까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초기에 가계소비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소비세의 환원으로 다시 회복되고 기업투자의 증가로 인해 GDP에 대해서 세수 비중립적 과세의 경우보다 그 증가분이 작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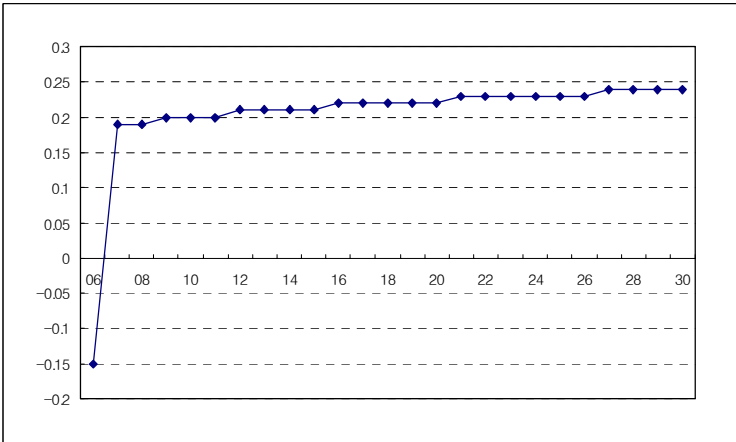
<그림 VII-17> 기준균형 대비 GDP 변화 (%)



<그림 VII-18> 기준균형 대비 소비지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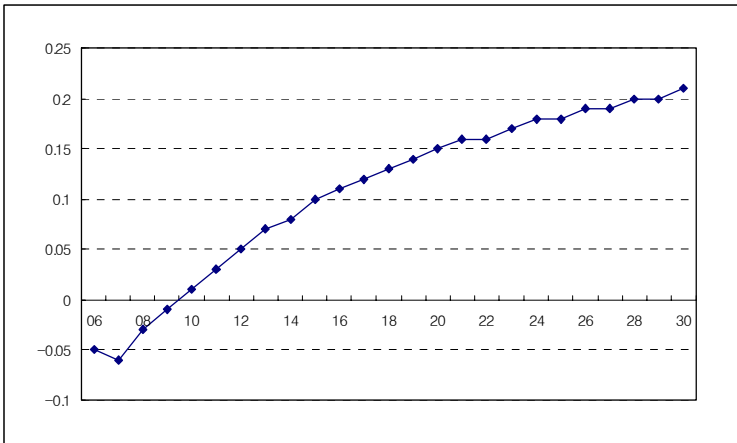
<그림 VII-19> 기준균형 대비 투자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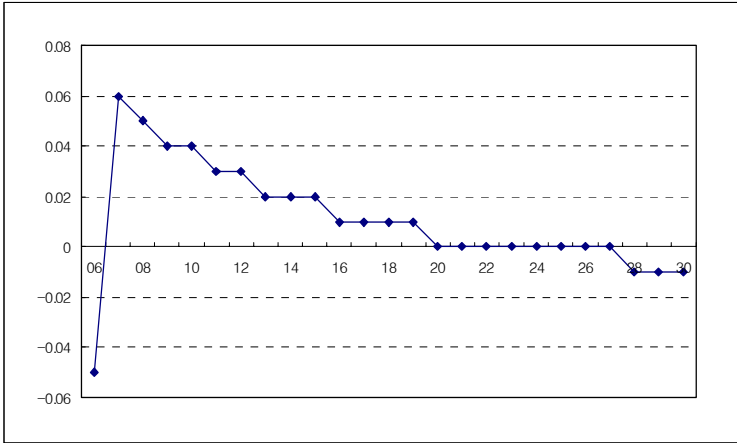
## 나. 생산요소부문의 변화

초기의 투자감소로 2006~2007년에 균형자본량은 0.05~0.06% 감소하지만 금융부문과 소비부문의 수요증가로 인해 생산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자본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 0.21%까지 증가한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가계의 노동공급곡선이 하향 이동하고 이에 따라 균형노동량에 대한 효과는 초기에 0.05%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노동요소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순 증가분은 2020년 이후 원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림 VII-20> 기준균형 대비 자본량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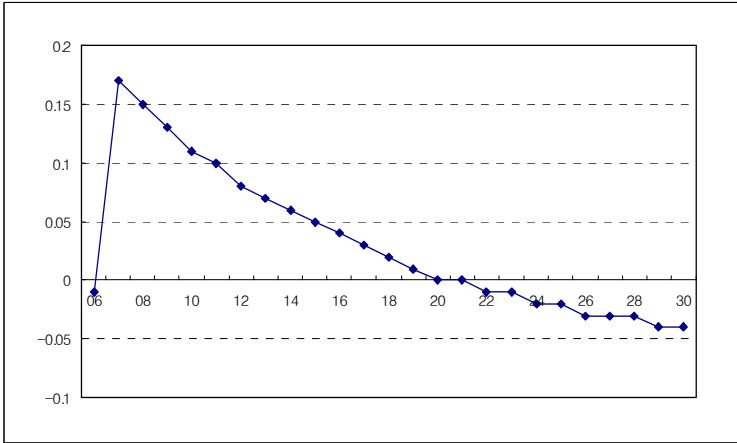
<그림 VII-21> 기준균형 대비 노동량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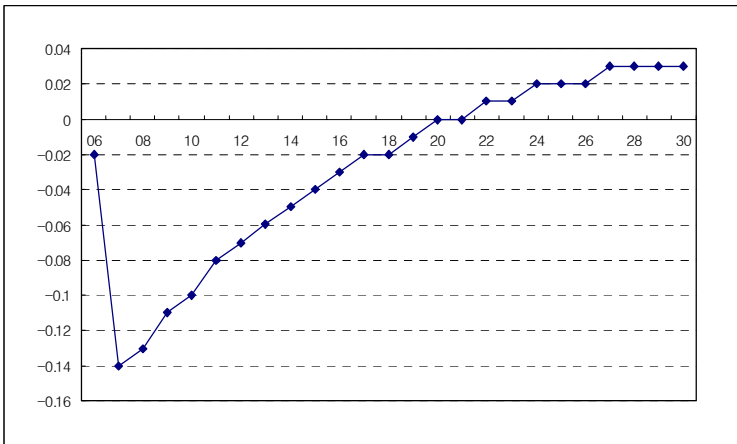
#### 다. 가격변화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과 소비세 환급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초기에는 0.17% 정도 상승하나 생산부문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점차 하락하여 2020년 이후 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는 실질임금을 반대방향으로 변하게 하므로 실질임금은 초기에 기준균형 대비 약 0.17% 정도 하락하였다가 2020년 이후 상승하게 된다. 미래물가의 변화는 완전예측(Perfect Foresight) 가정에 의해 현재 금리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2007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순간적으로 2006년 약 3%정도의 금리변화를 초래하지만 곧 회복되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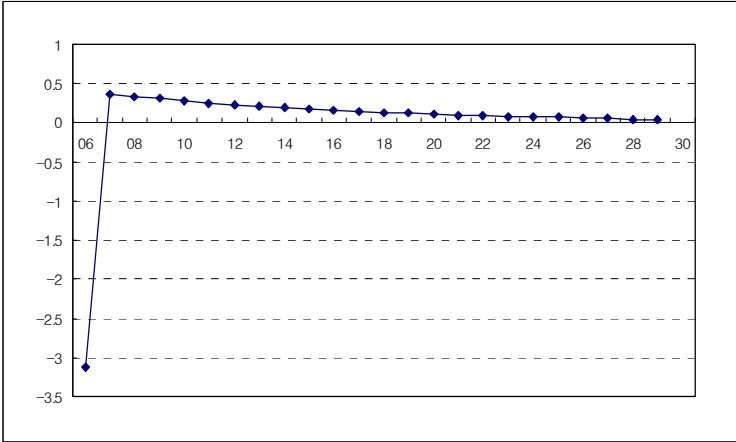
<그림 VII-22> 기준균형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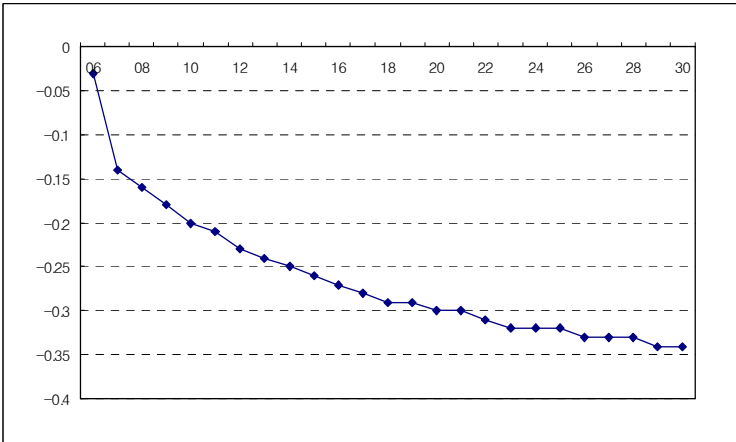
<그림 VII-23> 기준균형 대비 실질임금 변화 (%)



<그림 VII-24> 기준균형 대비 금리변화 (%)



<그림 VII-25> 기준균형 대비 생산자물가지수(PPI)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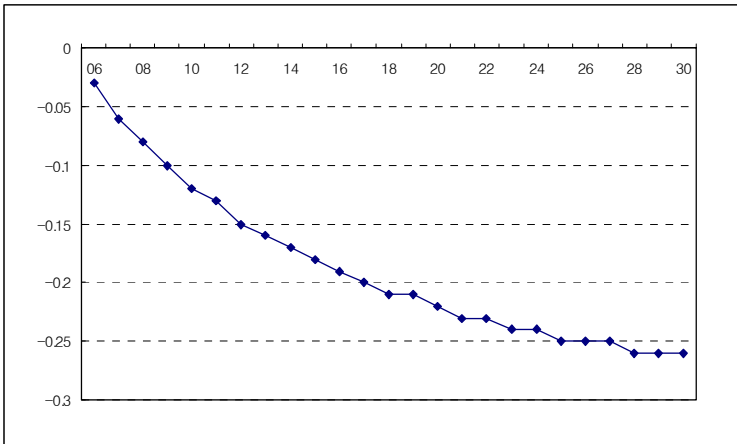


한편 금융부문의 부가가치세가 비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반면 금융부문의 요소투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므로 생산자물가지수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노동공급도 생산자물가지수의 하락에 기여하게 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초기에는 0.03% 하락하고 완만한 하락추세가 계속되어 2030년에는 0.34% 정도 하락하게 된다.

또한 GDP의 점진적인 상승에 의한 순 수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원화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여 2030년까지 기준균형 대비 0.26% 정도 하락하게 된다.

<그림 VII-26> 기준균형 대비 환율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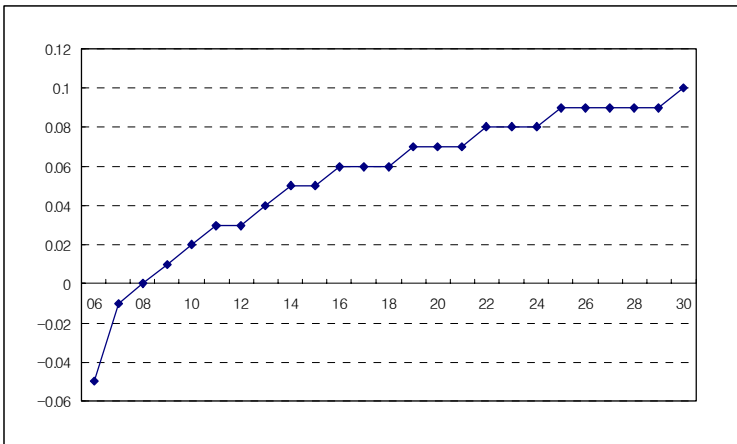
### 라. 산업별 생산량 변화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비금융산업의 요소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문에서 요소비용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가계부문은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을 부담해야 하므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나 세수중립적 과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생산량은 초기에 0.19% 증가하고 그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30년에 0.32%까지 증가한다. 이것은 금융부문의 생산량이 실험기간 내에 계속 감소를 보인 세수 비중립적 과세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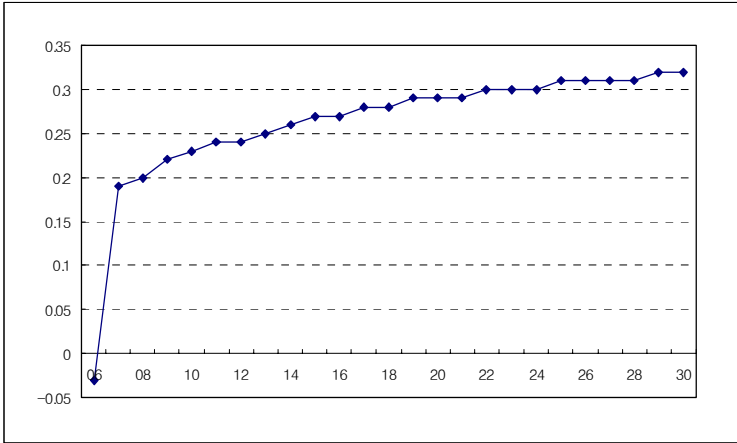
한편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비금융산업에 나타난다. 또한 금융산업의 증가투입물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비금융산업에 대한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종합적인 효과는 세수 비중립적 과세의 경우에 비해 완만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비금융산업의 생산은 초기에 약 0.05% 감소하고 추후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2030년 0.09% 증가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중간재생산까지 포함한 총생산량은 점점 증가하여 2030년까지 약 0.1% 증가한다.

<그림 VII-27> 기준균형 대비 생산량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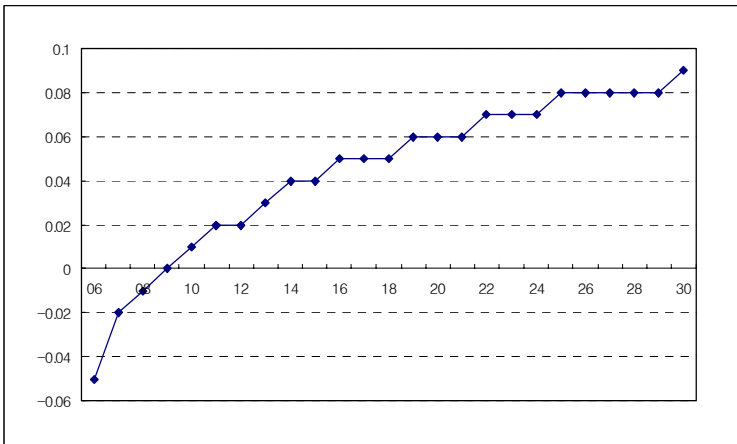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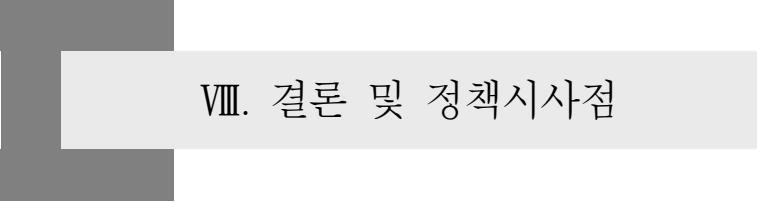
<그림 VII-28> 기준균형 대비 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그림 VII-29> 기준균형 대비 비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 VI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핵심적 고려사항은 세 가지이다. 먼저 그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것,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시행 가능한가 하는 것, 셋째 그것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측면, 즉 과세의 타당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Cash-Flow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를 어렵게 하던 기존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 Cash-Flow 시스템을 보완하는 각종 제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본 보고서의 핵심연구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그것이 GDP, 소비지출, 투자, 정부수입 등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CGE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우선 다른 조세에 대한 조정 없이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을 경우, GDP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그리고 투자, 정부지출 및 정부수입에 대해서는 각각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 세수증가분을 민간경제에 환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수중립적인 과세를 했을 경우, GDP, 투자, 금융부문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도 초기에만 약간 위축된 후 증가세를 보인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세수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중 하나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병호, 『금융기관론』, 제10판, 박영사, 2004.
- 김유찬,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대한 조정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 박경서, 「국내은행의 지배구조」, 예금보험공사 심포지엄 자료, 2002.
- 안창남, 「금융융역과 부가가치세」, 『조세법 연구』, Vol.8, 2002.
- 손양훈·신동천, 「환율변동이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45집 제1호, 1997, pp.123-139.
- 이창희,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울대 법학, 2002.
- 이태로·안경봉, 『조세법강의』, 제4판, 박영사, 1999.
- 전국은행연합회, 『교육세법 개정 건의안』, 2004.
- 재무부, 『한국부가가치세제사』, 1990.
-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8.
- 조경엽,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파급효과: Global CGE 모형에 의한 분석」, 『경제학연구』, 제48집 제4호, 2000, pp.323-368.
- 조경엽, 『조세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05.
-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제13판, 영화조세통람사, 2000.
- 홍범교 외,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

- Auerbach, A. J. and R. H. Gordon,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VA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2, 2002, pp.411-416.
- Barham, V., S. N. Poddar, and J. Whalley, "The Tax Treatment of Insurance under a Consumption Type, Destination Basis VAT," *National Tax Journal*, Vol.40, 1987, pp.171-182.
- Bernstein, P, W. Montgomery, and T. Rutherford, "Global Impacts of the Kyoto Agreement: Results of MS-MRT Model,"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Vol.21, 1999, pp.375-413.
- Chia, N.-C. and J. Whalley, "The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termediaries," *Journal of Money, Credit, Banking*, Vol.31, 1999, pp.714-719.
- Cullen, M., "Taxation(Annual Rates, GST, Trans-Tasman Imputation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Bill," *New Zealand Inland Revenue Department*, 2003.
- Department of Treasury,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1984.
- Edgar, T., "Exempt Treatment of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under a Value-Added Tax: An Assessment of Alternatives," *Canadian Tax Journal*, Vol.49, 2001, pp.1133-1219.
- European Commission, *Consolidated Text of Sixth Council Directives*, 2003.
- \_\_\_\_\_, *The TCA System-A Detailed Description*, 2000.
- \_\_\_\_\_, *Tax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2000.
- \_\_\_\_\_, *Value Added Tax: A study of Methods of Taxing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1996.
- Goulder, L. H. and L. H. Summers, "Tax Policy, Asset Price and Growth: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38, 1989, pp.265-296.

- Grubert, H. and J. Mackie, “Must Financial Services be Taxed under a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2000, pp.23-40.
- Hoffman, A., S. N. Poddar, and J., Whally, “Taxation of Banking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ype, Destination Basis VAT,” *National Tax Journal*, Vol.40, 1987, pp.547-554.
- Ireland Revenue, *Guide to Value-Added Tax*, 2003.
- \_\_\_\_\_, *Financial Institutions, Insurance Companies, Theatres, Providers of Passenger Transport, and Other Exempt Persons Acquiring Goods from Other EU Member States*, Value-Added Tax Information Leaflet No.13/01, 2001.
- \_\_\_\_\_, *Fourth Schedule Services*, Value-Added Tax Information Leaflet No.9/01, 2001.
- \_\_\_\_\_, *Value-Added Tax: A Guide to Value-Added Tax*, 2001.
- \_\_\_\_\_, *VAT and Financial Services*, 1999.
- Jack, W., “The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Broad-Based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2000, pp.841-851.
- Levin, M. and R. Peer, “Taxa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in Industrial Countries,” in Patrick Honohan (ed.), *Taxa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Theory and Practice for Emerging Economies*, The World Bank, 2003.
- McCann, E. and T. Edgar, “VAT Treatment of Interest and Financial Services with Competitive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Tax Notes International*, Vol.30, 2003, pp.791-820.
- Merrill, P. and H. Adrion,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ax,”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95.
- OECD, *Value-Added Tax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OECD Centr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1998.



- \_\_\_\_\_, *Indirect Tax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Instruments*, 1998.
- Poddar, S., “Consumption Taxes: The Role of the Value-Added Tax,”  
in Patrick Honohan (ed.) *Taxa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Theory and Practice for Emerging Economies*, The World Bank 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Poddar, S. N. and M. English,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Value Added Tax: Applying the Cash-Flow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Vol.50, 1997, pp.89-111.
- Rousslang, D. J., “Should Financial Services be Taxed under a Consumption Tax? Probably,” *National Tax Journal*, Vol.55, 2002, pp.281-291.
- Schenk, A. and H. Zee, “Financial Services and the Value-Added Tax,” in Howell Zee (ed.), *Taxing The Financial Secto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 Shoup, C., *Principles of National Income Analysis*, 1947, pp.105-106.
- Steuerle, C. E., *Taxes, Loans, and Inflation: How the Nation’s Wealth Becomes Misallocated*, 1985.
- Whally, J., “Taxation and Service Sector” in R.M. Bird and J.M. Mintz (ed.), *Taxation to 2000 and Beyond*. Canadian Tax Foundation, 1992, pp.269-286.
- Zee, H. H., “A New Approach to Taxing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under a VAT,” *National Tax Journal*, Vol.58, 2005, pp.77-92.

---

## Abstract

### **Economic Effects of Value-Added Tax on Financial Services in Korea**

Yu-Chan Kim  
Guangsug Hah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the necessity of levying value-added tax (VAT) on the financial services and to simulate its overall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Indeed, we survey the arguments in the literature and the problems caused by levying VAT on the financial sector.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employ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simulate possible effects on the economy.

Taking into account the tax burden of the economy, we simulate the effects for two scenarios. The first scenario is to levy VAT on the financial sector with keeping the other taxes unchanged and the second one is to levy VAT on the financial sector with adjusting the consumption tax such that there is no change in tax revenues due to the new taxation. That is, the second scenario is to implement the new taxation in a tax-neutral way.

In the former case, the negative effects on households and financial sector are dominated by the positive effects on non-financial firms and the government so that the tax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GDP and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households are ultimately positively affected and the financial sector significantly benefit from VAT taxation, while the overall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y are preserved. Hence, we conclude that the tax-neutral policy option is desirable if the new taxation is implemented.